

연금세제 효과연구

: 세제변화와 연금저축 행태를 중심으로

2017. 12

정원석 · 이선주

머 리 말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가 많은 재원을 들여 노인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할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노인빈곤의 근본적인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노후소득원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진 3층 연금체계를 구성하고 각각의 연금이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위해 연금자산을 축적하는 제도인 개인연금의 경우 세제혜택의 한도와 방식을 지속적으로 변화·발전시켜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이 노후소득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시행된 연금세제가 개인의 연금자산 축적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해외사례와 비교해 시사점을 찾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본 보고서에는 최근 변화해 온 사적연금 세제혜택의 효과를 분석하고 해외 유사 정책과 효과를 함께 분석하여 연금 세제혜택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것은 비단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세대의 짐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원 준비를 가능하게 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17년 12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한 기 정

■ 목차

요약 / 1

I. 서론 / 9

1. 연구배경 및 목적 / 9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 11

II. 우리나라 연금세제 현황과 변화 / 14

1. 우리나라 연금세제 / 14
2. 우리나라 연금세제 변화 / 19
3. 소결 / 22

III. 해외의 사적연금제도와 세제 특성 / 24

1. 미국 / 24
2. 영국 / 34
3. 소결 / 45

IV. 연금세제 효과분석 / 48

1. 총량적 분석 / 48
2. 미시적 분석 / 51
3. 소결 / 65

V. 연금세제 평가 및 제언 / 66

1. 연금세제 정책평가 / 66
2. 정책제언 / 68

VI. 결론 / 74

| 참고문헌 | / 76

■ 표 차례

- 〈표 I -1〉 기초연금 재정소요 예상 / 9
- 〈표 I -2〉 은퇴기 소득계층 이동 / 10
- 〈표 II -1〉 퇴직연금 세제요약 / 17
- 〈표 II -2〉 우리나라 연금세제 / 19
- 〈표 II -3〉 최근 우리나라 연금세제 변화 / 22
- 〈표 III -1〉 최근 3년간 미국 사적연금 세제혜택 한도 / 28
- 〈표 III -2〉 2017년 기준 조정총 소득(AIG)에 따른 Saver's Credit / 29
- 〈표 III -3〉 Saver's Credit 수혜자 수와 과세미달자 / 33
- 〈표 III -4〉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시행 시기 및 규모 / 35
- 〈표 III -5〉 퇴직연금 임의가입 대상 분류 / 36
- 〈표 III -6〉 연간 총 소득 대비 퇴직연금 기여율 변화 / 36
- 〈표 III -7〉 퇴직연금 미제공 시 벌금 / 37
- 〈표 III -8〉 영국 퇴직연금 가입률 변화 / 38
- 〈표 III -9〉 영국의 퇴직연금 납입금 증가 / 38
- 〈표 III -10〉 2016년 금융중개업자의 인식 및 이해도 / 42
- 〈표 IV -1〉 연도별 근로소득자 연금저축 가입자 수 및 납입총액 / 49
- 〈표 IV -2〉 연금세제 변화에 따른 근로자 연금저축 납입액 / 51
- 〈표 IV -3〉 재정패널 1~6차 데이터 요약 / 53
- 〈표 IV -4〉 연금세제 한도 확대에 따른 연금저축 납입액 변화 - 고정효과분석 / 57
- 〈표 IV -5〉 소득공제 한도 상향에 따른 연금저축 납입액 변화 - Tobit 분석 / 58
- 〈표 IV -6〉 재정패널 6~8차 데이터 요약 / 59
- 〈표 IV -7〉 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납입액 변화(신) / 63
- 〈표 IV -8〉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연금저축 납입액 변화 - Tobit 분석 / 64
- 〈표 V -1〉 근로자 소득수준별 과세미달자 비율 / 69
- 〈표 V -2〉 소득수준별 과세미달 근로자 연금저축 납입 현황 / 70
- 〈표 V -3〉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으로 연금저축 가입률 제고 시 납입액 및 세액공제액 / 71

■ 그림 차례

- 〈그림 Ⅲ-1〉 미국 401(k) 적립금 추이 / 30
- 〈그림 Ⅲ-2〉 Catch up Contribution 도입 이후 연령별 및 납입액 수준별 추이 / 31
- 〈그림 Ⅲ-3〉 Catch up Contribution 연도별 인지도 / 32
- 〈그림 Ⅲ-4〉 소득수준별 Saver's Credit 인식률 / 34
- 〈그림 Ⅲ-5〉 영국의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가입률 변화 / 39
- 〈그림 Ⅲ-6〉 영국의 소득수준별 규모별 퇴직연금 가입률 변화 / 40
- 〈그림 Ⅲ-7〉 연령별 퇴직연금 가입률 / 40
- 〈그림 Ⅲ-8〉 연령별 민간부문 퇴직연금 가입률 / 41
- 〈그림 Ⅲ-9〉 근로형태별 퇴직연금 가입률 / 42
- 〈그림 Ⅲ-10〉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의 연금제도 인식률 / 43
- 〈그림 Ⅲ-11〉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의 연금제도 이해도 / 44
- 〈그림 V-1〉 연도별 연금저축 적립금 추이 / 67

The Policy Analysis on Private Pension Tax Treatment

Serious elderly poverty problems are not only personal but also become social problems. The most important cause of the poverty is that people do not accumulate enough money during their working period. To encourage people to prepare enough money Korean government provides tax treatment for the pension savings.

Decreasing public pension's roll and extending private pension by providing tax treatment and subsidy is a global trend. For example, the US provides additional tax treatment limit over age 50 and tax credits to lower income earners. The UK started auto-enrollment for occupational pension from 2012. We analyze and compare the policy effects on pension savings in Korea and those countries.

We find that providing additional tax treatment limit in 2011 gives more incentives to higher income earners for pension savings than lower income earners and changing tax treatment method to tax credit in 2014 decreases lower income earners pension savings incentives because, in many cases, lower income earners do not have tax liabilities. Those properties are commonly observed in the US tax treatment study.

To make up for the weak points, we suggest refundable tax credit method as a policy alternative. We expect that additional facial spending for refundable tax credit will be about 30 billion and most beneficiaries should be lower income earners.

요약

I. 서론

-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가 되었음
 - OECD 기준 2014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8.8%로 세계 최고 수준임
 - 노인빈곤문제 완화를 위해 지난 정부는 기초연금을 도입하였으며 새 정부는 기초연금액 상향 조정을 계획하고 있음

- 이러한 심각한 노인빈곤율의 원인은 많은 국민이 근로기에 충분한 노후소득원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임
 - 정원석 · 김미화(2015)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기 중산층 절반이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였음

- 우리나라는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층 연금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은 제도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나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40% 안팎에 불과함
 - 따라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원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이 스스로 연금자산을 적립하는 개인연금의 역할이 필수적임

- 하지만 개인이 현재 소비를 줄이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장기간 유동성을 포기해야 하는 연금에 자산을 적립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
 - 따라서 개인이 연금자산을 적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공적연금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급

방식으로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임

II. 우리나라 연금세제 현황과 변화

1. 우리나라 연금세제

■ 우리나라 연금세제 역시 공·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음

- 2001년 이후 연금세제는 연금기여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E), 적립금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며(E), 연금수령 시 적립금과 운용이익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금에 대해 연금소득세로 과세(T)함
- 공적연금의 경우 기여금 납입 시 본인 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고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과세함
- 퇴직연금의 경우 납입 시 납입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며 수령 시 퇴직소득세로 과세함
 - 단, 퇴직연금에 본인이 임의로 납입한 납입금에 대해서는 납입 시(연금저축 포함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하고, 수령 시 연금소득세 혹은 기타 소득세로 과세함
-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 시 납입금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하며 수령 시 연금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로 과세함

2. 우리나라 연금세제 변화

- 공적연금의 연금세제는 2001년 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고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과세하는 EET 과세방식으로 변화함
- 공무원연금은 1960년, 군인연금은 1963년,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은 1975년,

그리고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작되었음

- 2001년 이전 기여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2001년 이후 기여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과세함

■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적용하는 세목을 2015년부터 연금소득세에서 퇴직소득세로 변경하였음

- 2014년까지는 퇴직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 3%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함
 - 하지만 퇴직소득세의 실효세율이 3% 미만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부터 산출된 퇴직소득세액의 30%를 할인한 금액을 연금수령 기간 동안 나누어 내는 방식으로 변경됨

■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역시 EET 과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세제적격 연금저축 세제혜택 한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 2002년 이후 240만 원이었던 연금저축 세제혜택 한도는 2007년 연간 300만 원으로, 그리고 2011년 연간 400만 원으로 상승하였음
- 2014년에는 연금저축 세제혜택 방식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음

■ 한편, TEE 과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의 비과세 한도 조건은 월납입액 15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음

Ⅲ. 해외의 사적연금제도와 세제 특성

1. 미국

- 미국의 경우 다양한 사적연금이 존재하고 세제혜택 한도 역시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임
 - 대표적인 사적연금인 401(k)의 경우 본인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18,000달러임
 - 50세 이상자의 경우 추가로 6,000달러의 세제혜택 한도가 주어짐
 - IRA의 연간세제혜택 한도는 5,500달러이며 50세 이상자의 경우 1,000달러의 추가 세제혜택 한도가 부여됨

- 미국은 2001년부터 중·고령자의 연금자산 축적을 돕기 위해 50세 이상자에게 추가적인 세제혜택 한도를 부여하는 Catch up Contribution을 도입함
 - Catch up Contribution 도입 이후 기존 401(k) 본인납입금 수준이 높은 50대 이상 대상자의 납입액이 증가하였음

- 또한, 저소득층의 연금자산 축적을 돕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사적연금 납입액의 최대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Saver's Credit을 도입하였음
 - 부부합산 연소득 37,000달러 이하는 50%, 40,000달러 이하는 20%, 그리고 62,000달러 이하는 납입액의 10%를 세액공제함
 - Saver's Credit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저소득층의 Saver's Credit 인지율 역시 낮다는 한계가 있음

2. 영국

- 영국은 2012년부터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자동으로 가입하도록 한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Auto enrollment)를 도입하였음
 -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로 인해 근로자가 거부의를 표시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됨
 - 자동가입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연금 납입금의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절반은 고용주 납입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임
 - 이러한 특징 때문에 퇴직연금에 자동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하는 근로자의 숫자는 적은 수준임

-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도입 이전 55%까지 감소하였던 퇴직연금 가입률은 2016년 78%까지 제고되었음
 - 특히, 제도 도입 이전 퇴직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크게 개선되었음

IV. 연금세제 효과분석

1. 총량적 분석

-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해 연금저축 세제혜택 확대 및 세제혜택 방식 변화에 대한 가입자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반응을 관찰함
 - 세제혜택 확대 이후 고소득층의 연금저축이 저소득층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119만 원이던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2011년 세제혜택 한도 상향 조정 이후 123만 원으로 4만 원 증가함

- 2010년 261만 원이던 연소득 8,000만 원 이상 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2011년 세제혜택 한도 상향 조정 이후 313만 원으로 52만 원 증가함
- 세제혜택 방식 변경 이후 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이 고소득층에 비해 크게 감소함
 - 2013년 159만 원이던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2014년 세액공제 도입 이후 62만 원으로 97만 원 감소함
 - 2013년 323만 원이던 연소득 8,000만 원 이상 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2014년 세액공제 도입 이후 322만 원으로 1만 원 감소함

2. 미시적 분석

- 재정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타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연금저축 세제혜택이 연금저축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재정패널 데이터에는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가족구성, 연금저축 가입여부 및 납입액, 연소득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정보가 수록되어 있음
-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2011년 연금저축 세제혜택 상향 조정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의 연금저축이 저소득층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세제혜택 한도와 함께 연소득, 금융자산의 규모 역시 연금저축 납입액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2014년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이 고소득층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됨
 - 세제혜택 방식과 함께 연소득 및 자산 규모 역시 연금저축 납입액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음
-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세통계분석을 활용한 분석, 그리고 제도의 효과를 예측한 관련 연구인 문성훈·김수성(2014), 정원석·강성호(2015)의 결과와도 일치함

V. 연금세제 평가 및 제언

- 세제혜택 한도 상향 조정으로 인해 고소득층 연금저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액공제로 인해 저소득층 연금저축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지금까지 연금저축 세제혜택 제공은 중산층 이하 계층에게는 실질적인 연금저축 가입·납입유인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세제혜택의 근본적인 한계는 과세미달자가 많은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연금저축 가입·납입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임
 - 미국의 사적연금 세액공제(Saver's Credit)의 경우 역시 과세미달자에게 세제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독일, 영국, 그리고 뉴질랜드의 경우 사적연금 가입률이 크게 제고되었음

- 따라서 과세미달자가 많은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환급형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환급형 세액공제는 저소득 과세미달자에게도 중산층 이상 계층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제공해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줄 수 있음
 - 지출되는 재원의 대부분이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

VI. 결론

-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빈곤율을 고려할 때 중산층 및 저소득층이 노후소득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우리나라의 연금세제 변화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의 경우 실질적인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얻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음

- 세계를 통한 사적연금 납입유인 제공 방식의 한계와 문제점은 미국 사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음
 - 영국, 독일, 뉴질랜드 등 국가는 세제혜택의 한계를 보조금 지급을 도입함으로써 보완하였음
-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은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2년 48.5%에서 2013년 49.6%로 또다시 증가하였다. 이러한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대책이 대선공약이 될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도입되었다. 또한 새정부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2021년까지 최대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정지출은 기존 지급수준인 20만 원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2040년에는 재정지출 규모가 연간 10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규모를 고려했을 때 연간 100조 원의 재정지출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개인이 스스로 충분한 노후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은 개인의 노후소득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표 I-1〉 기초연금 재정소요 예상

구분	2013년	2020년	2030년	2040년
재정소요	9.6조 원	17.2조 원	49.3조 원	99.8조 원

자료: 보건복지부 설명자료(2013. 9)

심각한 노인빈곤율의 근본적인 원인은 근로기에 중산층 혹은 그 이상이었던 계층이 근로기에 충분한 노후소득원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정원석·김미화(2015)에 따르면 근로기 고소득층이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는 2.3% 수준인 데 반해 근로기에는 중산층을 유지하다가 은퇴와 동시에 근로소득이 감소하면

서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53%, 그리고 근로기에 저소득층이었던 가구의 경우 80%가 은퇴연령 이후 노후 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근로기에 일정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중산층이 노후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

〈표 I-2〉 은퇴기 소득계층 이동

(단위: 명, %)

구분	1차 조사 (2004년)	이동	4차 조사(2010년)		
			빈곤	중위	상위
빈곤	720 (40.0)	→	578 (32.1)	138 (7.7)	4 (0.2)
중위	866 (48.0)	→	458 (25.4)	390 (21.6)	18 (1.0)
	이동률		52.9	45.0	2.1
상위	216 (12.0)	→	43 (2.4)	141 (7.8)	32 (1.8)
합계	1802 (100)	→	1079 (59.9)	669 (37.1)	54 (3.0)

자료: 정원석·김미화(2015) 재구성

우리나라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등의 공적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층 연금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40년간 가입 시 은퇴 이후 생애평균소득의 40%를 대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정부는 공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어민 및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공적연금 평균 납입기간이 약 25년 정도임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약 25%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¹⁾ 따라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원 확보를 위해서는 사적연금을 통한 추가적인 노후소득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은 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하 근

1) 강성호(2015)

퇴법)에 의해 고용주가 제공의무를 지는 연금제도이다. 현재는 고용주의 판단에 따라 퇴직금과 퇴직급여 중 선택하여 제공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정부정책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퇴직연금 가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노후소득대체율은 약 10~15% 수준²⁾으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합친다 해도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충분한 노후소득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연금자산 이외에 개인이 스스로 충분한 연금자산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3층 연금체계의 최상단에 위치한 개인연금은 이러한 추가적인 노후소득원 준비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개인연금은 은행, 증권, 보험 및 여타 금융기관에서 가입이 가능한 세제적격 연금저축(이하 연금저축)과 생명보험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하 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세제지원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연금자산이 적립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세제혜택이 개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 및 납입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사적연금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살펴본다.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세제가 개인의 연금자산 저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로는 세제혜택 한도 상향 조정에 따른 연금저축 가입자의 납입액 변화를 살펴본 김병권 등(201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2007년 연금저축 세제혜택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연금저축 가입자들의 납입액 변화를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연금저축 세제혜택 한도 상향 조정은 연금저축 가입자들의 납입액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최근 이루어진 연금세제 변화에 대한 효과분석으로는 정원석·강성호(201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재정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분위회귀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연금저축

2) 강성호·류건식(2016)

납입액의 세제혜택 방식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경우 세제혜택 방식이 세액공제로 변화하더라도 저축여력과 세제혜택 한도로 인해 연금저축 납입액이 민감하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반면 중산층은 제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과거 소득수준별 연금저축 행태를 바탕으로 경제학적 방법론에 따라 제도변화에 따른 연금저축 납입행태를 예측한 것으로 실제 행태를 관측하고 분석한 것은 아니다. 문성훈·김수성(2014)은 제도에 기반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금저축 세제혜택 방식이 세액공제로 변화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이 감소할 것을 예상하였다.

앞선 연구들이 제도변화 이전 제도의 효과를 예측하였다면, 제도변화 이후 수치(數值)를 기반으로 정책효과를 살펴본 연구로는 정원석·문성훈(2016)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세제혜택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이후 연금저축 납입액 소득수준별 행태 변화를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세액공제로 세제혜택 방식을 전환한 이후 중·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률 및 납입액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률 및 납입액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음을 밝히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연금저축이 감소한 이유는 세액공제 도입 이후 과세미달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앞서 세제효과를 예측한 정원석·강성호(2015), 문성훈·김수성(2014) 등의 연구와 상당한 일관성을 유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만, 이들의 연구가 모집단 통계량을 기반으로 현상과 상관관계를 설득력있게 제시했지만, 여러 가지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정책변화와 연금저축 납입액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한 것은 아니라는 한계를 가진다. 이와 달리 본 보고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정책효과를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사적연금 세제혜택과 저축행위를 분석한 해외 연구로는 Orszag(200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저축여력이 큰 고소득층에 집중되었으며, 저소득층에는 실질적인 사적연금 납입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때문에 사적연금 준비가 꼭 필요한 저소득계층에 최대 50%까지 지원해 주는 Saver's Credit 제도가 소득공제보다 더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그는

Saver's Credit 역시 과세미달자에게는 어떠한 사적연금 납입유인도 주지 못하므로 이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 다른 연구인 Rutledge(2015)는 미국에서 50세 이상자에게 추가적인 사적연금 세제혜택 한도를 제공하는 Catch Up Contribution에 대한 가입자 특성에 따른 분석을 실행하였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기존 사적연금 납입액 수준이 높은 계층의 경우 Catch up Contribution 적용연령 도달 시 사적연금 납입액이 증가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계층은 정책에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사적연금 납입액이 많은 계층이 소득이 높고 금융지식이 높은 계층임을 유추할 때 추가적인 세제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원석·강성호(2015)가 실시한 연구와도 동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사적연금 세제의 변화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한 해외사례를 살펴본 후 시사점을 찾는다. 이어 우리나라 세제변화가 연금자산 적립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더 나은 연금저축 유인정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II. 우리나라 연금세제 현황과 변화

1. 우리나라 연금세제

우리나라의 연금세제는 연금기여금 납입 시 기여금에 대해서 비과세(Exempt), 적립금 운용 시 운용이익에 대해서 비과세(Exempt), 그리고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과세(Tax)하는 EET 과세체계를 기본으로 한다. 수령하는 연금은 본인이 납입한 기여금과 기여금의 운용이익을 연금기간 동안 나누어 수령하는 것이다. 따라서 납입기와 운용기 수익에 대한 비과세 부분을 연금수령 시기에 과세함으로써 납입금과 운용이익 모두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EET 과세체계에서도 수익에 대한 과세 누락은 일어나지 않는다.

가. 공적연금

공적연금 세제는 기본적인 연금 과세체계와 동일하게 연금기여금에 대해 비과세, 적립금 운용이익에 대해 비과세, 그리고 연금수령액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가입자는 연간 총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며 납입하는 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는 해당금액을 과세대상 금액에서 제외하는 소득공제 방식이 적용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공적연금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공적연금 보험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납입하는 보험료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근로자에게는 비과세한다. 기여금 납입 후 연금수령 시기까지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연령 등의 연금수령 조건을 만족하여 공적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수령액에 대해 연령에 따라 3~5%로 과세되는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거나, 소득에 따라 6~40%의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 중 수령자에게 유리한 방법에 따라 과세한다. 단,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본인기여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금 등의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여 연금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경우에는 공·사적연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과 여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과세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적용한다.

나.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에 관한 법률은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1년 총 소득의 8.3%(1/12) 이상을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혹은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고용주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한 금액의 경우 근로자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며 고용주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한다. 또한, 납입한 적립금의 운용기간 중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본인의사에 따라 자신의 DC계좌 혹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에 납입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본인 기여분에 대해서는 납입 시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하여 최대 700만 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의 가입자 기여분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은 납입액에 대해 비과세하는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의 고용주 기여분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과 달리 소득 수준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금액의 12% 혹은 15%를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한다. 그리고 본인납입금의 적립금 운용기간 동안에는 운용이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퇴직연금 수령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출처, 그리고 적립금의 수령 방식에 따라 과세를 달리한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 수령 시 고용주 기여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로 과세한다. 퇴직소득세는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 원칙을 적용하며, 적립기간에 따른 연분연승법³⁾을 적용하여 여타 과

세방식에 비해 근로자의 부담이 적다. 2015년 이전까지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수령금액의 3%를 연금소득세로 과세하였다. 하지만 퇴직소득세율의 실효세율이 3%보다 낮아 연금소득세 과세가 퇴직소득세율보다 높고,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는 사적연금이 연간 600만 원⁴⁾이 넘을 경우 종합과세를 적용받게 되어 일시금 수령에 비해 연금수령이 불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2015년 이후부터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고 결정된 퇴직소득세액의 70%만을 연금수령기간 동안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다. 퇴직연금 적립금 중 본인기여분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저축 일시금 수령과 같은 세율 15%의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령에 따라 3~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한다.

3) 1년 이상 장기에 걸쳐 발생된 금융소득이 일시에 지급될 경우, 동 시점의 다른 소득과 종합 합산해 누진과세하게 되면 세 부담이 과중되므로 이런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세금 계산법임. 총 소득을 연분(발생기간으로 나뉘)해 1년의 소득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한 뒤, 그 세금에 연승(발생년수를 곱)해 총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임(네이버 시사경제용어사전)

4) 2013년 이후 1,200만 원(소득세법 제14조의 9)

〈표 II-1〉 퇴직연금 세제 요약

구분	DB형	DC형	개인형 IRP	
			퇴직 IRP	적립 IRP
납입주체	사용자(기업)	사용자(기업) 및 근로자	사용자	근로자
운용주체	사용자(기업)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불입한도	해당 없음	연금저축계좌와 합산 연 1,800만 원(퇴직금 제외)		
과세대상	퇴직금	퇴직금(기업) + 근로자 납입분 + 운용이익	근로자 납입분	
과세시점	55세 이후 퇴직 시			
세제 혜택	납입 시	-	근로자 납입분 연 700만 원 내 세액공제 [12%(13.2%),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15%(16.5%)]	
	수령 시	사업주 기여분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 과세		
	요건	근로자 기여분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연 1,200만 원 한도)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사업주 기여분 퇴직소득세, 근로자 기여분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이익에 대한 기타소득세(16.5%)		

자료: 정원석·임준·김유미(2016)

다.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적립금 납입 시 세제혜택이 있는 대신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이하 연금저축)과 적립금 납입 시 세제혜택이 없는 대신 연금수령액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생명보험사의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하 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 시 소득수준에 따라 적립금에 대해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12% 혹은 1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혹은 IRP 본인부담금은 소득세법상 연금계좌로 묶어서 취급하며, 연금계좌의 세제혜택 한도는 연간 700만 원,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이다.⁵⁾ 운용 시 운용이익에 대한 과세는 하지

5) 2013년 이전 납입한도 1,200만 원

않으며 연금수령 시에는 연령에 따라 3~5%의 연금소득세를 과세한다.

단, EET 체계에 따라 납입 시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과세하고, 납입 시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원금은 비과세하고 운용이익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로 과세한다.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경우 2012년까지는 일시금으로 수령했던 세제혜택을 모두 반납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로 과세하였다. 하지만 중도인출에 대한 과도한 과세가 연금저축 가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2013년부터는 중도 혹은 일시금 인출 시 납입한 원금과 운용이익에 대해 15%의 기타 소득세를 과세한다. 연금수령 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혹은 IRP 본인부담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금 총액이 연간 1,200만 원이 넘을 경우 공적연금 및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한다.

연금보험은 적립 시에는 세제혜택이 없으나 계약기간 10년 이상, 월납입 기간 5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연금수령 시 과세하지 않는다. 2017년 4월 이전에는 월 적립식 연금보험에 대한 연금수령 시 비과세 한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7년부터는 월 적립액이 150만 원을 넘을 경우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3

〈표 II-2〉 우리나라 연금세제

구분		납입 시	수령 시	기타
공적 연금	고용주 기여분	비과세	종합소득세	연금소득세 선택 가능
	본인 기여분	소득공제		
사적 연금	퇴직 연금	고용주 기여분	연금: 퇴직소득세 일시: 퇴직소득세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감면
		본인입의 기여 (DC, IRP)	세액공제 (700만 원 한도- 연금저축 포함)	연금: 연금소득세 일시: 기타소득세
	개인 연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400만 원 한도)	연금: 연금소득세 일시: 기타소득세
		연금보험	과세 (세제혜택 없음)	비과세

2. 우리나라 연금세제 변화

가. 공적연금

공적연금 도입 초기 세제혜택 방식은 기여금 납입 시 기여금은 과세대상으로 하되, 운용 시 운용이익과 연금수령 시 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TEE 방식이었다. 2001년부터 연금세제가 변경되어 2001년에는 납입액의 5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였고, 2002년부터는 공적연금 납입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대신 연금수령 조건을 만족시키고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과세하는 EET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공적연금 중 공무원연금은 196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군인연금은 1963년에 공무원연금에서 분리되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은 197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모든 국민들이 가입대상인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공적연금 가입자가 수령하는 연금 중 2001년 이전 기여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나. 퇴직연금

2005년 퇴직연금이 도입되기 이전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현재는 고용주에 따라 퇴직연금과 퇴직금이 혼재해 있으므로 이를 통칭하여 퇴직급여라 한다.⁷⁾ 근로자를 위한 퇴직급여 적립주체인 고용주가 적립하는 퇴직급여는 고용주의 손금으로 인정되며, 근로자에게도 과세하지 않는다. 단, 퇴직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로 과세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과세체계는 기여금 납입 시점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운용기간 동안 운용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으나 적립금 수령시점에는 적립금과 운용이익 모두에 대해 과세하는 EET 과세체계를 취하고 있다. 2015년 이전에는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율 3%의 연금소득세로 과세했으나, 2015년부터는 결정된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수령 기간 동안 나누어 납입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다.

2013년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본인납입금은 연금저축과 함께 연금계좌로 통합되어 두 계좌의 연간 적립금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납입 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졌다. 2014년부터는 연금계좌 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이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연금계좌의 세제혜택 한도가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단,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한도는 400만 원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다. 개인연금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가입 혹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연금제도로써, 세제혜택이 개인의 연금가입 및 납입액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하지만 개인연금의 경우 개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여부 및 납입금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세제혜택이 개인연금 가입 및 납입액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연금저축 세제는 기본적으로 EET 체계를 유지하면서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강화하

7)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적립금의 사외적립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는 본 보고서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다루지 않음

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연금저축 납입 시의 세제혜택 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2년 이후 240만 원에서 2007년 연간 300만 원으로, 그리고 2011년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상 규정되어 있던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은 2013년에 소득세법으로 이전되었다. 김병권 등(2013)은 노동패널 자료 분석을 통해 2007년 시행된 세제혜택 한도 상향이 연금저축 납입액 증가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하였다.

2014년 정부는 고소득층의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기 위해 연금저축 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이후 중산층의 세부담 급증으로 발생한 “연말정산 대란”으로 인해 2015년부터는 연소득 5,500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세액공제율 12%, 이하 해당자에게는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세액공제율 15% 적용으로 인한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 증가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⁸⁾

2017년에는 계약기간 10년 이상의 장기저축성 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이 변경되면서 이에 준하여 연금보험에 대한 세제가 변경되었다. 기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즉시납 연금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되었다. 월 적립식 연금보험의 경우 제도변경 전에는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적립액 규모 및 수령방식에 상관없이 적립금 수령 시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였다. 그러나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이자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계약기간 및 납입기간은 동일하나 월 납입액이 150만 원을 넘을 경우 이자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월 납입액이 한 달이라도 150만 원을 넘을 경우 전체 적립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소멸한다. 단, 최초계약부터 연금을 종신형으로 수령하기로 계약된 연금보험의 경우 월 납입액 규모와 상관없이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 비과세한다.

8) 정원석·마지혜(2017)

〈표 II-3〉 최근 우리나라 연금세제 변화

구분		2002	2006	2011	2014	2015	2017
공적		납입액 100% 소득공제	-	-	-	-	-
	퇴직 연금 IRP	-	-	-	-	세액공제 한도 300만 원 추가	-
사적	연금 저축	소득공제 한도 240만 원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	세액공제 전환	세액공제율 15% 신설	-
	연금 보험	-	-	-	-	-	비과세 한도 월 150만 원

자료: Chung(2017)

3. 소결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연금저축 현황에 따르면 연금저축에 가입은 되어있지만 납입되지 않는 연금저축 계좌의 비중은 25.9%이고, 계좌당 평균 납입금액은 연간 242만 원에 그쳐 세제혜택 한도인 400만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수령자의 수령액 수준 역시 낮아 계좌당 평균 연금수령액은 연간 331만 원으로 월평균 28만 원에 불과하며, 평균 수령기간 역시 6.4년에 불과해 연금저축이 노후소득 보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미미한 수준이다.⁹⁾ 따라서 정부의 지속적인 연금세제혜택 확대 및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여 사적연금을 준비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2017)에 따르면 노후대비 생활자금마련을 위한 노후소득원을 추가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나는 질문에 대해

9)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 4)

98.2%가 그렇다고 응답할 정도로 개인들은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 이외의 소득원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를 정리하면 국민 대다수가 사적연금 등 추가적인 노후소득원 확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적극적으로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에 자금을 적립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가입자가 노후자금을 준비해야 하는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연금에 자산을 적립함으로써 10년 이상 초장기간 돈이 묶이게 되며, 또한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 연금자산 적립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현재의 한계 효용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이 충분한 연금자산을 적립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혹은 여타 가입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이 완화되기 어려우며 노인빈곤율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결국 미래세대가 짊어지게 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자발적인 연금자산 축적을 장려하기 위한 해외의 사적연금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Ⅲ. 해외의 사적연금제도와 세제 특성

본 장에서는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해 우리나라와 다소나마 유사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와 사적연금 자동가입제도와 보조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1. 미국

가. 사적연금제도와 세제

미국의 사적연금은 대부분 직업과 관련된 퇴직연금 형태로 가입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퇴직연금(퇴직급여)의 기본적인 납입금은 법에 의해 고용주가 부담하는 데 반해 미국 퇴직연금의 고용주 부담금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한다.¹⁰⁾ 그리고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우리나라 연금저축 혹은 IRP 추가 납입과 동일한 특징을 가진다.

미국의 퇴직연금은 직종에 따라 이름과 세제혜택 한도가 부여된다. 대표적인 사적연금으로는 401(k), 403(b), IRA, SEP IRA, SIMPLE 등을 들 수 있다.

10) 단, 우리나라 DC형 퇴직연금의 추가납입액 및 IRP 추가납입액은 가입자가 납입수준을 결정하고 부담함

1) 401(k)

401(k)¹¹⁾는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은퇴계좌로 납입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적립금은 고용주 기여금(Defined Contribution)과 본인 소득공제혜택이 부여되는 본인 추가 납입금으로 나눌 수 있다. 고용주 기여금과 본인납입금의 세제혜택 한도는 매년 새롭게 정해지는데 지난 3년간 큰 변화는 없었다.

고용주 기여금과 본인납입금을 합쳐 401(k) 계좌에 적립이 가능한 연간 세제혜택의 최대한도(Defined Contribution Limit)는 54,000달러이다. 이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납입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Elective Deferrals)는 18,000달러이다. 그리고 연령이 50세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6,000달러의 추가적인 세제혜택 한도가 주어진다. 따라서 401(k)에 가입된 50세 이상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연금을 납입하고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기본한도 18,000달러와 Catch up Contribution에 의한 6,000달러를 더한 24,000달러가 된다. 하지만 예를 들어 회사에서 40,000달러를 기여할 경우 회사가 납입하는 기여금과 본인이 납입하는 납입금의 총합이 54,000달러를 넘을 수 없으므로 5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도 본인 납입 세제혜택 한도는 24,000달러가 아닌 14,000달러가 된다.

공공기관 혹은 비영리단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노후대비를 위해서는 403(b)가 운용되고 있다. 403(b)의 세제혜택 한도는 401(k)와 대체로 동일하다.

2) SIMPLE IRA

SIMPLE IRA(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는 사업장 규모가 작아 퇴직연금에 가입하기가 어려운 100명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노후대비를 위한 제도이다. 401(k)의 본인 추가납입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SIMPLE IRA 계

11)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의 401조 k항(Subsection 401(k))에 규정된 내용을 의미함. 하지만 401(k)는 이미 미국의 퇴직연금을 대표하는 고유명사로 쓰이는 만큼 본 고에서도 퇴직연금의 한 종류를 일컫는 의미로 사용함

좌에 납입금을 추가할 수 있다. 연간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는 12,500달러이며 50세 이상자의 경우 Catch up Contribution을 적용받아 3,000달러의 추가적인 세제혜택 한도가 주어진다.

3) IRA

IRA는 우리나라의 IRP와 유사한 제도로 소득이 있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개설할 수 있으며, 연간 세제혜택 한도 5,500달러 내에서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A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2017년 기준으로 1인 의 경우 연소득이 62,000달러보다 낮은 경우 IRA 한도액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소득이 62,000달러 이상~72,000달러 미만인 경우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소득이 72,000달러 이상인 경우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부부 공동의 경우 연소득이 99,000달러 이하이면 IRA 한도액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99,000달러 이상~119,000달러 미만이면 납입액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119,000달러 이상이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4) SEP

SEP IRAs(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s)는 IRA를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위한 연금제도이다. 자영업자 혹은 가입 자격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SEP IRA에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SEP IRA의 가입 자격은 21세 이상인 근로자로 해당 사업장에서 지난 5년 중 최소 3년 이상을 근무했어야 하며, 고용주가 1년에 최소 600달러 이상을 근로자의 SEP IRA에 납입해줄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조건을 만족할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SEP IRA에 가입할 수 있다.

SEP IRA 가입 근로자는 연소득의 최대 25%(혹은 최대 54,000달러)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400,000달러인 SEP IRA 가입자의 경우 연소득의 25%는 100,000달러지만 동 가입자의 세제혜택 한도는 54,000달러이므로 54,000

달러까지만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고용주가 납입해 주는 기여금의 경우 최대 270,000달러까지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ESOP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은 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사주 제공 프로그램으로 미국퇴직연금법에 규정되어있는 제도이다. 미국 세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자사주 제공에 대해 연간 215,000달러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5년간 한도는 1,080,000달러이다.

6) Catch up Contribution

미국정부는 2001년부터 장년층 노후소득 확보를 돕기 위해 50세 이상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세제혜택 한도를 부여하는 Catch up Contribution을 도입하였다. Catch up Contribution 적용으로 50세 이상자는 연간 401(k)와 403(b)에 6,000달러까지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SIMPLE IRA plan의 경우 연간 3,000달러, 그리고 IRA의 경우 연간 1,000달러까지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50세 이상 401(k) 가입자는 401(k)에 기본 세제혜택 한도 18,000달러에 Catch up Contribution 6,000달러를 더해 최대 24,000달러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IRA가입자는 기본 한도 5,500달러에 Catch up Contribution 1,000달러를 더해 최대 6,500달러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표 Ⅲ-1〉 최근 3년간 미국 사적연금 세제혜택 한도

(단위: 달러)

구분	2017	2016	2015
IRAs			
IRA 한도	5,500	5,500	5,500
IRA Catch-up Contributions	1,000	1,000	1,000
IRA 소득공제가 줄어드는 소득기준			
부부공동	99,000	98,000	98,000
단독	62,000	61,000	61,000
SEP			
SEP 최소	600	600	600
SEP Maximum Contribution	54,000	53,000	53,000
SEP Maximum Compensation	270,000	265,000	265,000
SIMPLE Plans			
SIMPLE Maximum Contributions	12,500	12,500	12,500
Catch-up Contributions	3,000	3,000	3,000
401(k), 403(b), Profit-Sharing Plans, etc.			
Annual Compensation	270,000	265,000	265,000
Elective Deferrals	18,000	18,000	18,000
Catch-up Contributions	6,000	6,000	6,000
Defined Contribution Limits	54,000	53,000	53,000
ESOP Limits	1,080,000	1,070,000	1,070,000
	215,000	210,000	210,000

자료: IRS(2017)

7) Saver's Credit¹²⁾

Saver's Credit은 저소득층의 은퇴 이후 노후소득원 마련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Saver's Credit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401(k), 403(b), 퇴직연금 및 IRA 등의 사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수혜자는 18세 이상이고 소득세 신고 시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보고되지 않아

12) 공식명칭은 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s Credit임

야 하는 등의 부수적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리고 풀타임 학생의 경우 Saver's Credit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Saver's Credit의 가장 큰 특징은 저소득층에 더 많은 연금 납입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달리 적용한다는 점이다. Saver's Credit의 세액공제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납입금의 10%, 20%, 50%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부부가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Tax Filing) 시 연소득이 37,000달러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은 50%를 적용한다. 연소득이 37,000달러 초과 40,000달러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은 20%, 그리고 연소득이 40,000달러 초과 62,000달러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은 10%이다. 그리고 연소득이 6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Saver's Credit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단독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연소득 27,750달러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 50%, 30,000달러 이하인 경우 20%, 46,500달러 이하인 경우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개인이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연소득 18,500달러 이하인 경우 공제율 50%, 연소득 20,000달러인 경우 공제율 20% 그리고 연소득 31,000달러인 경우 공제율 10%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Saver's Credit 신청조건을 만족하는 가입자는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그대로 받으면서 Saver's Credit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세액공제 금액의 최대한도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및 부부합산 신고자의 경우 2,000달러이며 개인의 경우 1,000달러이다.

〈표 Ⅲ-2〉 2017년 기준 조정총 소득(AIG)에 따른 Saver's Credit

(단위: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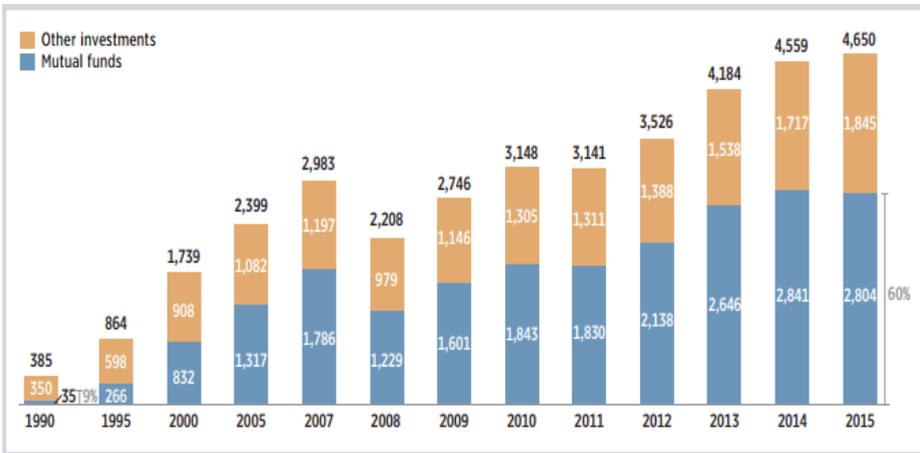
공제비율	부부합산	세대주 단독	부양가족 없는 개인
납입금의 50%	~37,000	~27,750	~18,500
납입금의 20%	37,001~40,000	27,751~30,000	18,501~20,000
납입금의 10%	40,001~62,000	30,001~46,500	20,001~31,000
공제불가	62,000 초과	46,500 초과	31,000 초과

자료: IRS(2017)

나. 성과와 한계

미국의 대표적인 사적연금인 401(k)의 적립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적립금 규모는 1990년 3,850억 달러에서 2000년 1조 7,390억 달러로 4.5배 성장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5년 현재 4조 6,50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특히, 2001년 도입된 Catch up Contribution과 2002년 도입된 Saver's Credit과 같은 사적연금 증대 정책은 미국 사적연금 자산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1〉 미국 401(k) 적립금 추이



자료: 미국연방준비제도 및 노동부자료 재인용

1) Catch Up Contribution

Catch up Contribution은 앞서 설명한 대로 은퇴가 임박한 중·고령자들의 연금자산 적립을 돕기 위해 50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세제혜택 한도를 제공하는 제도로 2001년부터 시행되었다. 401(k) 등에 가입된 퇴직연금 가입자는 납입액에 대해 기본 세제혜택 한도 18,000달러 이외에 추가로 6,000달러까지 세제혜택(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1년 Catch up Contribution 도입 이후 미국 401(k)의 적립금 규모는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최근 Rutledge(201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한 경제주체는 Catch up Contribution 대상인 50세 이상의 401(k) 등 퇴직연금 가입자 중 기존 퇴직연금 납입금이 많고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 이들의 본인부담 납입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2〉 Catch up Contribution 도입 이후 연령별 및 납입액 수준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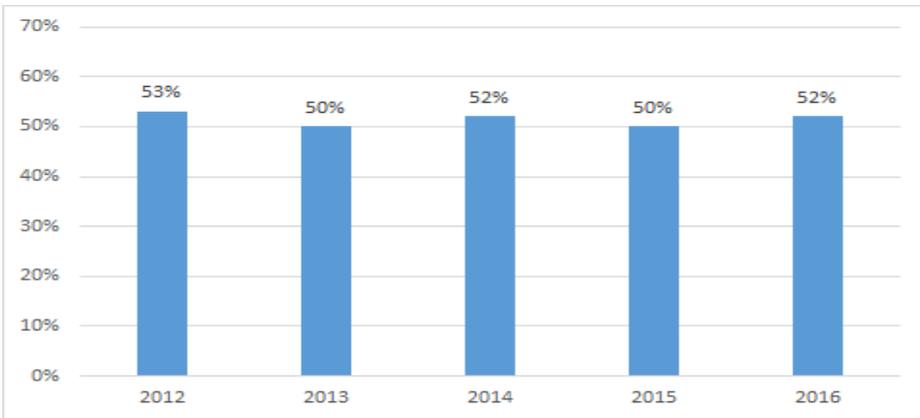
자료: Rutledge(2015)

〈그림 Ⅲ-2〉에서 보면 상단의 진한 실선은 50-53세 가입자 중 Catch up Contribution 도입 이전 사적연금 납입액이 세제혜택 한도를 한 번이라도 충족시켰던 그룹의 평균 납입액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회색실선은 46-49세로 제도 도입 이전 사적연금 납입액이 세제혜택 한도를 충족시킨 경험이 있지만, Catch up Contribution의 대상자가 아닌 그룹의 평균 납입액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점선으로 표현된 사적연금 세제혜택의 한도액을 한 번도 충족시킨 경험이 없는 그룹은 Catch up Contribution 도입 전후의 사적연금 저축 추이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적연금 납입액이 한도를 채운 적이 있는 Catch up Contribution 적용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두 계층의 사적연금 납입액이 세제혜택 추가부여(Catch up Contribution) 이후 차이가 발생한 것은 정책효과를 받는 대상자들인 고연령층이 정책에 반응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주로 퇴직급여에 대한 의식이 높고, 높은 소득으로 저축여력이 큰 계층이 정책에 반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Catch up Contribution 인지도의 경우에도 제도 시행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근로자의 52%만이 제도를 알고 있을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3〉 Catch up Contribution 연도별 인지도



자료: Transamerica(2016)

2) Saver's Credit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Saver's Credit은 소득수준별로 최대 50%까지 차등화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명목상으로는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 산출된 세금을 감면해주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인해 과세미달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2005년 기준 전체 신청자 7,350만 명 중 Saver's Credit의 수혜를 받은 신청자의 숫자는 2,390만 명으로 수혜율은 32.3%의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저소득 계층인 세액공제율 50% 대상자의 Saver's Credit 수혜율은 신청자의 2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저소득층에 연금 납입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금납입

액에 대해서는 과세미달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Refundable Tax Credit)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¹³⁾

〈표 Ⅲ-3〉 Saver's Credit 수혜자 수와 과세미달자

(단위: 백만 명, %)

세액공제율	수혜자	신청자	수혜율
50%	13.3	48.1	27.6
20%	2.1	3.6	58.3
10%	8.4	21.8	38.5
합계	23.9	73.5	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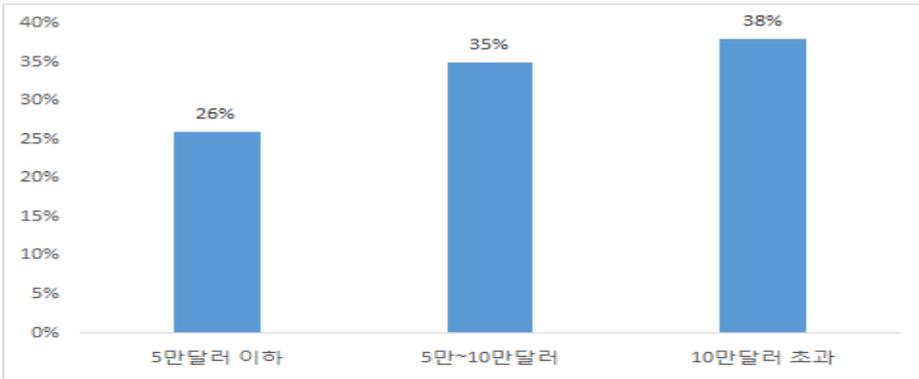
자료: RSP(2008) 수록 자료를 재구성

Catch up Contribution과 마찬가지로 Saver's Credit 역시 제도 시행 15년이 지났지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중 Saver's Credit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새천년세대의 38%, X-세대의 30%, 그리고 베이비부머의 29%가 Saver's Credit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Saver's Credit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응답자 중 약 26%만이 Saver's Credit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도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자의 제도 인지율은 3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¹⁴⁾ 이는 정책 대상자들이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중요한 부분임을 시사한다.

13) Orszag(2004)

14) 16th Annual Transamerica Retirement Survey

〈그림 Ⅲ-4〉 소득수준별 Saver's Credit 인식률



자료: 17th Annual Transamerica Retirement Survey

2. 영국

가.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영국의 대표적인 사적연금제도로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자동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에 탈퇴를 허용하는 방식을 적용한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Auto Enrollment)가 있다. 우리나라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전액 부담하지만, 영국의 경우 퇴직연금 납입액의 절반은 정부와 고용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며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탈퇴가 가능하다. 본인이 스스로 본인급여의 일정부분을 연금자산으로 적립하며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연금저축과 유사하다.

1) 제도 도입 개요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는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한 법적기준을 충족시키는 근로자를 연금에 자동가입되도록 한

제도로써 2008년 연금법(Pension Act, 2008)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12년 10월부터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에 자동으로 가입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10월부터 25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14년 4월부터는 50명 이상 250명 미만, 2015년 8월부터는 30명 이상 50명 미만, 그리고 2016년부터 2017년 4월까지 30명 미만 전 사업장으로 퇴직연금 자동가입 대상이 확대되었다.

〈표 Ⅲ-4〉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시행 시기 및 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수	시행 시기
250명 이상	2012.10.10~2014.2.1
50명 이상~250명 미만	2014.4.1~2015.4.1
30명 이상~50명 미만	2015.8.1~2015.10.1
30명 미만	2016.1.1~2017.4.1

자료: The Pensions Advisory Service 홈페이지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적격근로자만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의 대상이 된다. 적격근로자 조건으로는 첫째, 22세 이상 국가연금 수급개시 연령¹⁵⁾(State Pension Age, 이하 SPA) 미만일 것, 둘째, 영국에서 근로할 것, 셋째, 연 수입 1만 파운드 이상일 것 등이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면 자동 가입 적격근로자로서 퇴직연금 자동가입 대상이 된다. 또한, 나이와 소득에 따라 임의로 퇴직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자격을 갖는 근로자도 있는데, 임의가입 조건으로는 첫째, 16세 이상 7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5,824파운드 이하인 근로자 혹은 둘째, 16세 이상 74세 미만 10,000파운드 이하 근로자 및 소득기준 충족 16~21세 또는 SPA~74세 미만인 근로자를 들 수 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주는 퇴직연금 제공 의무를 가지며 해당 법으로 정해진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 자동 가입 기간 내에 퇴직연금을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는 퇴직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을

15) 1970년 4월 5일 이전 출생자는 65세, 1970년 4월 6일 이후 1978년 4월 5일 이전 출생자는 현재 출생 시기에 따라 67세에서 68세 사이, 그리고 1978년 4월 6일 이후 출생자는 68세임

경우 퇴직연금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탈퇴 의사를 표명하면 퇴직연금에서 탈퇴(Opt out)가 가능하다. 하지만 퇴직연금에서 탈퇴한 근로자라 할지라도 향후 퇴직연금 재가입의사를 밝힐 경우 퇴직연금에 재가입(Re-enrollment)할 수 있다.

〈표 Ⅲ-5〉 퇴직연금 임의가입 대상 분류

(단위: 파운드)

소득	나이		
	16~21	22~SPA	SPA~74
5,824 미만	적격근로자(Entitled worker)		
5,824 이상~10,000 미만	비적격근로자(Non-eligible jobholder)		
10,000 이상	비적격근로자	비적격근로자	비적격근로자

자료: The Pensions Regulator(2017), "Detailed guidance for employment"

현재 퇴직연금 자동가입 기여율은 근로자 연소득의 2%이며, 이 중 본인부담률은 0.8%, 사업주 부담률은 1%, 그리고 정부 보조금은 0.2%이다. 2018년 4월부터 전체 기여율은 연소득의 5%로 인상되며, 본인기여율은 2.4%, 고용주 기여율은 2%, 그리고 정부 보조금은 0.6%로 인상된다. 마지막으로 2019년 4월 이후 전체 기여율은 8%까지 증가하며, 이 중 본인기여율은 4%, 고용주 기여율은 3%, 그리고 정부 보조금은 1%로 인상될 예정이다.

〈표 Ⅲ-6〉 연간 총 소득 대비 퇴직연금 기여율 변화

(단위: %)

구분	근로자	고용주	정부	계
~2018.3	0.8	1	0.2	2
2018.4~2019.3	2.4	2	0.6	5
2019.4	4	3	1	8

자료: The Pensions Advisory Service 홈페이지

2) 퇴직연금 미제공 시 벌금부과 및 NEST 도입

퇴직연금 자동가입 당사자는 근로자이지만 근로자의 퇴직연금가입을 결정하고 퇴

직연금 기여금의 상당부분을 납입하는 주체는 사업주이다. 따라서 자동가입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영국 정부는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자동가입 기간 내에 퇴직연금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연되는 날짜만큼 하루당 일정금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때, 하루당 벌금 규모는 사업장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직원 수 1~4명의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 지연 시 하루당 50파운드, 4~49명은 하루당 500파운드, 50~249명은 하루당 2,500파운드, 250~499명은 하루당 5,000파운드, 그리고 5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당 10,0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러한 점증적 벌금체계 (Escalating Penalty Notice)는 사업장 규모별로 고용주에게 충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규제당국은 이러한 벌금 체계가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정착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¹⁶⁾

〈표 Ⅲ-7〉 퇴직연금 미제공 시 벌금

(단위: 파운드)

직원 수	하루당 벌금
1~4인	50
4~49인	500
50~249인	2,500
250~499인	5,000
500인 이상	10,000

자료: The Pensions Regulator (2016), "Compliance and enforcement policy"

나.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의 성과

1) 퇴직연금 가입률 변화

2017년 4월 기준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대상 근로자 수는(Eligible jobholders) 779

16) The Pensions Regulator(2016a)

만 명까지 증가했고,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가 처음으로 등장한 2012년 이후 영국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영국의 퇴직연금 가입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62%에서 2012년에 55%까지 감소하였으나, 2012년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가 시행된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16년에는 78%에 달하였다.¹⁷⁾

〈표 Ⅲ-8〉 영국 퇴직연금 가입률 변화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공공부문	89	88	88	90	91	91	92
민간부문	44	42	42	46	63	70	73
합계	58	56	55	58	70	75	78

자료: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2006 to 2016)

영국은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도입 이후 퇴직연금 납입금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의 퇴직연금 납입금은 자동가입제도 도입 이전 감소하다가 제도 도입 이후 2012년 747억 파운드에서 2016년 871억 파운드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9〉 영국의 퇴직연금 납입금 증가

(단위: 십억 파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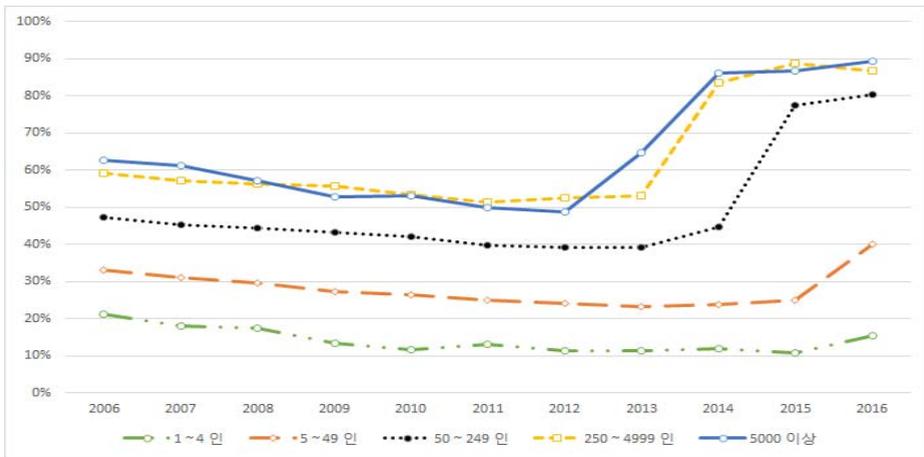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공적연금	39.1	37.4	36.6	37.9	37.4	38.9	40.7
사적연금	38.4	37.3	38.1	39.8	43.0	44.4	46.4
전체	75.7	74.7	74.7	77.7	80.4	83.3	87.1
근로자	20.2	19.3	20.1	22.5	24.3	25.3	26.2
사용자	50.4	49.5	48.2	47.6	48.1	49.6	52.1
정부	5.8	6.0	6.3	7.5	8.0	8.4	8.8

자료: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2006 to 2016)

17) 가입자 수는 2005년 1,200만 명에서 2012년 1,070만 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16년에는 1,510만 명으로 증가하였음

퇴직연금 가입률은 사업장 규모에 따른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적용 여부에 따라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50명 이상 사업장에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가 적용되는 2014년에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84%로 2013년 53%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50명 이상 250명 미만 사업장에 퇴직연금 자동가입이 적용되는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45%에서 77%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5~49명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도 자동가입제도 적용과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자동가입 완료기한이 2017년까지이므로 2016년 현재 가입률이 대형사업장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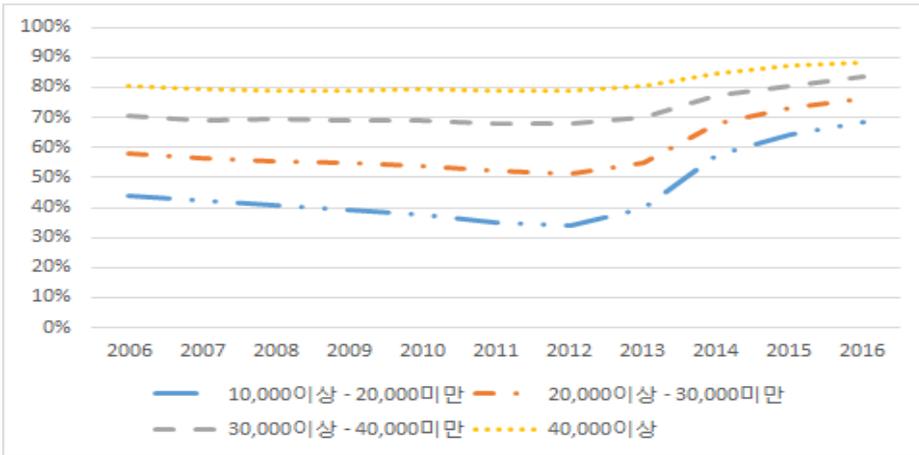
〈그림 Ⅲ-5〉 영국의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가입률 변화



자료: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2006 to 2016)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가 도입된 이후, 모든 소득계층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증가하였다. 특히, 연소득 10,000~20,000파운드의 저소득층 퇴직연금 가입률이 제도 도입 전 2012년 34%에서 제도 도입 이후 2016년 69%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 및 임시직 등 기존 제도의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자들이 자동가입제도로 인해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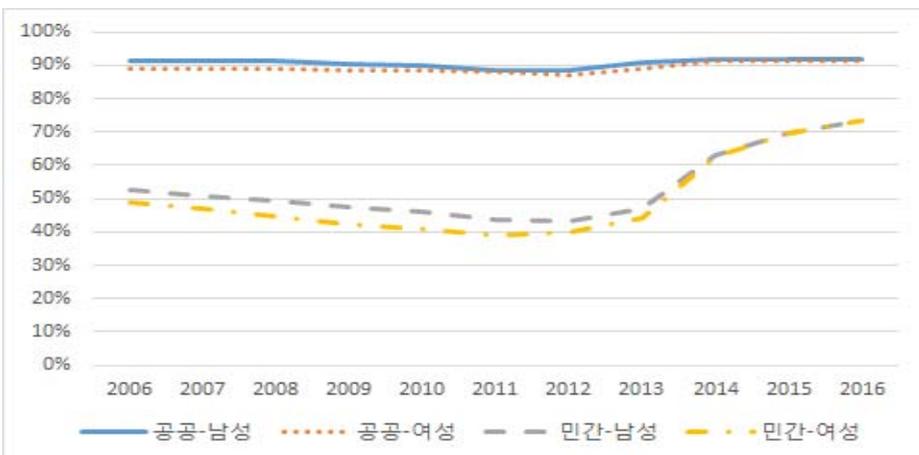
〈그림 Ⅲ-6〉 영국의 소득수준별 규모별 퇴직연금 가입률 변화



자료: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2006 to 2016)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도입 이후 남·여 민간근로자의 연금 가입률 차이도 상당히 줄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 민간부문 남성과 여성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각각 44%와 39%로 5%p 차이가 났으나, 자동가입제도 도입 이후 2016년에 두 성별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73%로 같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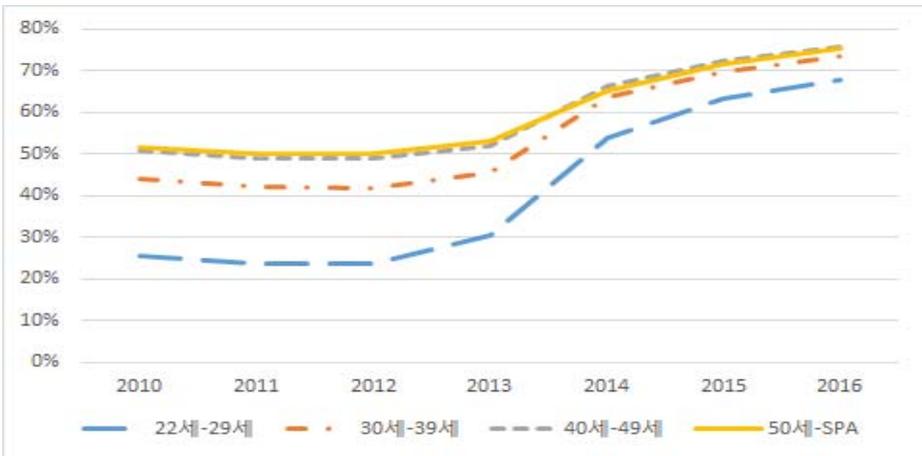
〈그림 Ⅲ-7〉 연령별 퇴직연금 가입률



자료: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2006 to 2016)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도입에 따른 연령별 퇴직연금 가입률 변화를 살펴보면 전 연령에서 퇴직연금 가입률이 상승한 가운데, 20대 근로자들의 가입률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민간부문 근로자의 경우 자동가입제도가 적용되기 전인 2012년에는 퇴직연금 가입률이 24%였지만 2016년에는 68%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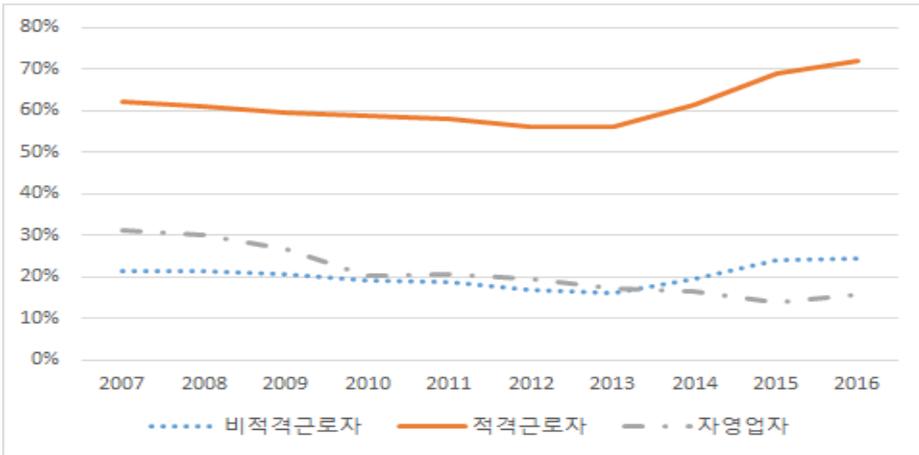
〈그림 Ⅲ-8〉 연령별 민간부문 퇴직연금 가입률



자료: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2006 to 2016)

반면,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의 경우 퇴직연금 자동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동가입제도 도입으로 근로자(피고용인)는 전체 납입금의 절반만을 본인이 부담하나, 자영업자는 정부보조금 1%p를 제외한 7%p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자영업자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자동 가입된 퇴직연금을 유지할 유인이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Ⅲ-9〉 근로형태별 퇴직연금 가입률



자료: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2006 to 2016)

2)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이해도 변화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이유 중 하나로 제도 시행 관련자 및 대상자들의 높은 제도 인지 및 이해도를 들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금융 중개업자의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률과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과 회사 회계 담당자의 제도에 대한 인지 및 이해도가 높다는 것은 자동가입 제도 적용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으로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Ⅲ-10〉 2016년 금융중개업자의 인식 및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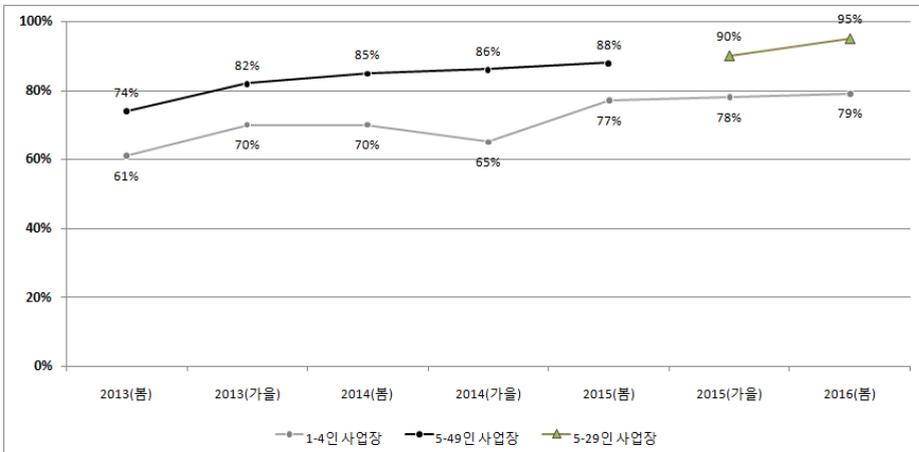
(단위: %)

관리자 유형	인식도	이해도
투자자문역	100	96
급여관리자	98	95
회계사	97	91
회계 담당자	99	98

자료: Automatic enrollment commentary and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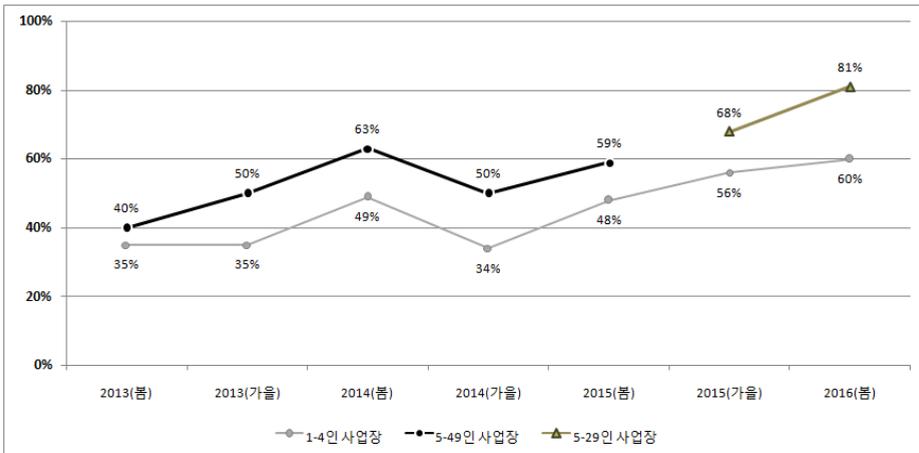
특히, 제도 시행 이전부터 퇴직연금 가입률 제고의 필요가 컸던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의 퇴직연금 자동가입에 대한 인식률과 이해도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13년 61%에 불과했던 4인 이하 사업장 고용주의 자동가입제도 인식률은 해당 사업장이 퇴직연금 자동가입 대상이 되기 직전인 2016년 79%까지 증가하였다. 그리고 고용주가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있는 정도인 제도 이해도 역시 2013년 35%에서 2016년 60%까지 제고되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3년 74%였던 인식률은 2015년 88%까지, 그리고 이해도 역시 2013년 40%에서 2015년 59%까지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0〉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의 연금제도 인식률



주: 5~29인 사업장의 조사는 2015년부터 이루어졌으며, 5~49인 사업장은 2015년 이후 보고되지 않음
 자료: DWP(2016), Employer automatic enrolment research spring 2016

〈그림 Ⅲ-11〉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의 연금제도 이해도



주: 5~29인 사업장의 조사는 2015년부터 이루어졌으며, 5~49인 사업장은 2015년 이후 보고되지 않음
 자료: DWP(2016), Employer automatic enrolment research spring 2016

3) NEST(National Employees Savings Trust)

모든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퇴직연금에 자동가입되도록 제도를 마련했지만, 보험 회사나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이 규모가 작아 수익이 적거나 퇴직연금 제공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설정을 거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영국 정부는 2008년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도입을 계획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의 후원을 통해 NEST(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 이하 NEST)를 설립하였다. NEST는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퇴직연금을 제공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국 노동청의 후원을 받아 설립된 공공 퇴직연금 회사이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공을 위해 설립된 공공 퇴직연금 회사이지만 NEST 가입을 위한 회사 규모 등의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다.¹⁸⁾

NEST의 장점 중 하나는 중소기업도 퇴직연금 설정이 용이하다는 점과 함께 수수

18)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공단이 NEST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은 30인 이하 사업장만이 가입이 가능함

로 체계가 투명하고 수준 역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NEST는 연간 납입금에 대해 1.8%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적립금에 대해서는 연간 0.3%의 적립금 운용수수료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현재 9,000파운드가 퇴직연금 계좌에 있고 새로 1,000파운드를 적립할 경우, 적립금에 대한 수수료 18파운드와 기존적립금과 납입금의 합인 10,000파운드에 대한 운용수수료 30파운드를 합한 48파운드가 연간 수수료가 되어 총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은 0.48% 수준에 불과하다. 수수료 부과에 대한 내역은 NEST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그 이외의 수수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민간금융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Stakeholder Scheme 혹은 연간 운용수수료 0.5% 비해 낮은 수준이다. Stakeholder Scheme의 경우 만기 시 전체 적립금 및 수익금 대비 87%가 가입자의 몫이 되며, 적립금 대비 0.5%의 수수료 부과 시 93.4%가 가입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데 반해 NEST의 경우 94.2%를 가입자에게 돌려주게 된다.¹⁹⁾

2016년 3월 기준 NEST 가입근로자는 32만 명을 넘었고, NEST를 통해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사업장의 수는 8만 6천 곳을 넘었으며, 8.27억 파운드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다. 이는 2015년 기준 근로자 2만 명, 사용자 1만 4천만 명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²⁰⁾

3. 소결

자발적인 연금자산 축적을 장려하기 위한 해외사례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특징으로는 첫째, 세제혜택 한도를 상향하는 방식은 전체 연금 자산의 규모를 증가시키며,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연금자산 축적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국내 사례에서 보듯이 중산층의 경우 은퇴로 인해 근로소득이 사라지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세제지원은 효과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사한 정책을 시행한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세제혜

19) NEST 홈페이지(<http://www.nestpensions.org/schemeweb/nest/aboutnest/nest-charges.html>)

20)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2016)

택 한도 상향은 고소득층의 연금자산 확대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통한 노후 빈곤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는 미국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세제혜택 상한의 상향 조정 혹은 세액공제 방식이 저소득층의 연금자산 적립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세제혜택 한도 상향의 경우 저축여력이 적은 저소득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세액공제 적용의 경우 과세미달자가 많은 저소득층은 감면받을 세액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연금자산 적립유인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국은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시행 이후 사적연금 가입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입방식과 보조금 지급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경우 사업자와 정부가 연금 적립금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과세미달자에게도 동일한 연금자산 적립유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동가입 이후 탈퇴를 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근로자와 달리 사업주로부터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제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 보조금과 사업주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퇴직연금 지원금이 영국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탈퇴하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가입방식 역시 자동가입 후 탈퇴가 가능한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생각은 있으나 결정하지 못하는 근로자 등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동가입 방식의 가입률 제고 효과는 뉴질랜드 키위플랜 자동가입제도에서도 볼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 살펴본 퇴직연금 해외사례의 시사점을 스스로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연금자산을 적립하는 우리나라의 연금저축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401(k)는 퇴직연금이지만 본인이 세제혜택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액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연금저축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 또한, 영국의 퇴직연금 역시 자동가입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자유로운 탈퇴 및 재가입이 가능하고 납입금도 본인의 급여에서 일정부분을 퇴직연금계좌에 적립금으로 납입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연금저축과 유사하다. 따라서 앞서 살

펴본 미국과 영국의 사례는 우리나라 연금지축 세제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IV. 연금세제 효과분석

앞서 언급한 대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입여부 및 납입금이 결정되므로 세제혜택이 개인의 연금가입 및 납입액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여부 및 납입액 정도가 정해지는 개인연금의 경우 가처분 소득과 실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혜택이 연금가입 및 납입의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변화에 따른 가입자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 정책 변화로는 연금저축 세제혜택 상향 조정에 대한 가입자의 반응, 연금저축 세제혜택 방식 변화에 따른 가입자의 반응, 그리고 연금보험 비과세 혜택조건 변경에 따른 가입자의 반응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연금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 조정과 관련한 가입자의 반응은 축적된 데이터가 없다는 한계가 있어 분석이 어렵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변경된 연금저축 세제에 따른 가입자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춰 정책효과를 분석한다.

1. 총량적 분석

우리나라에서 세금과 관련된 가장 정확한 자료는 국세청에서 전체 납세자의 모집단 통계량을 정리해서 제공하는 국세통계연보이다. 연도별 연금저축 세제변화와 연금저축 납입액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2011년 연금저축 세제혜택 한도 확대가 근로소득자의 연금저축 행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수치를 통해 살펴보면, 2010년 근로자 수는 1,518만 명에서 2011년 1,554만 명으로 36만 명(2.4%) 증가하였다. 그런데 근로소득자 중 연금저축 가입자 수는 2010년 189만 명에서 218

만 명으로 29만 명(15.1%)이나 증가하였고, 연금저축 납입액의 경우 2010년 4.17조 원에서 5.42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이를 볼 때 연금저축 세제혜택 확대 이후 근로자의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세제 혜택 한도 증가 이후 연금저축 가입자 수가 약 15% 증가한 것에 비해 연금저축 납입액 증가는 약 30%에 이르러, 신규 가입자로 인한 전체 연금저축 납입액 증가보다 기존 가입자의 납입액 수준 상승으로 인한 전체 납입액 증가가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2014년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이후 연금저축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수치를 통해 살펴보면,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연금저축 납입자 수는 2014년에는 전년 대비 약 6만 명(2.5%), 2015년에는 7만 명(2.8%) 감소하였으며, 납입액은 2014년에 전년 대비 3,483억 원(5.5%), 2015년에는 847억 원(1.4%) 감소하였다.

〈표 IV-1〉 연도별 근로소득자 연금저축 가입자 수 및 납입총액

(단위: 만 명, 억 원, %)

구분	근로소득자			근로자 중 연금저축 납입자			근로자 총 연금저축 납입액		
	인원 수	전년비 증감	전년비 증감률	인원 수	전년비 증감	전년비 증감률	총 납입액	전년비 증감	전년비 증감률
2010	1,518	88.2	6.2	189	19.3	11.3	41,771	5,217	14.3
2011	1,554	36.3	2.4	218	28.6	15.1	54,224	12,452	29.8
2012	1,577	22.8	1.5	237	19.6	9.0	61,059	6,835	12.6
2013	1,636	59.1	3.8	241	3.2	1.3	63,880	2,822	4.6
2014	1,669	32.7	2.0	235	-5.9	-2.5	60,398	-3,483	-5.5
2015	1,733	64.6	3.9	228	-6.5	-2.8	59,550	-847	-1.4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연금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재산이 많은 자산가의 경우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자산을 축적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반면, 자산이 많지 않은 중·저소득층의 경우 은퇴 이후 일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원으로서 연금자산 축적이 필요하다. 하지만 저축여력을 고려하면 고소득 자산가 계층은 연금자산을 축적할 여력이 충분한 반면, 중·저소득층은 저축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정책도입 이후 연금저축 행태를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제혜택 변화에 따른 연금저축 납입액을 살펴보면 2011년 연금저축 세제혜택 한도 상향은 주로 고소득층 연금저축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 납입액 세제혜택 한도가 상향 조정된 2011년에는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계층의 가입률이 1.04%로 전년 대비 0.19%p 증가하였으며, 가입자 일인당 평균 납입액은 1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4만 원 증가하였다. 반면, 연소득 8,000만 원 초과 계층의 경우 가입률은 64.8%로 전년 대비 4.3%p 증가하였고, 평균 납입액은 3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만 원 증가하였다. 이는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 상향 조정이 기존 세제혜택 한도를 모두 채웠거나, 저축여력이 높은 고소득층에 추가적인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저소득층의 경우 납입액 평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제혜택 한도에 이르지 못한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세제혜택 한도 상향이 이들 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14년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저축 세제혜택이 증가하여 중·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이 증가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저소득층 연금저축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이 변경된 2014년에는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계층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0.83%로 전년 대비 0.34%p 감소하였으며, 평균 납입금액은 62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만 원 감소하였다. 반면, 연소득 8,000만 원 초과 계층의 경우 가입률은 64.4%로 전년 대비 1.3%p 감소하였고, 평균 납입액은 32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만 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12%의 낮은 세액공제율,²¹⁾ 세액공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환기된 효과²²⁾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 세제혜택 방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가입률과 납입액 평균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액공제로 인해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의 연금저축 납입유인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세액공제로 얻을 수 있는 12%의 무위험 수익률은 여타 금융상품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에 비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²³⁾

21) 정원석·강성호(2015)

22) 강성호(2017)

〈표 IV-2〉 연금세제 변화에 따른 근로자 연금저축 납입액

(단위: %, 만 원)

구분	~2,000		2,000~4,000		4,000~6,000		6,000~8,000		8,000 초과	
	가입률	평균 납입액	가입률	평균 납입액	가입률	평균 납입액	가입률	평균 납입액	가입률	평균 납입액
2010	0,85	119	11,7	180	33,4	221	50,9	242	60,5	261
2011	1,04	123	11,9	185	34,3	243	52,4	277	64,8	313
2012	1,16	129	11,6	192	34,0	247	52,8	286	66,3	320
2013	1,17	159	10,0	201	31,6	249	51,3	289	65,7	323
2014	0,83	62	7,9	156	28,9	242	49,5	287	64,4	322
2015	0,37	39	6,1	147	25,4	236	47,6	281	63,3	319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재구성

논의를 정리하면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한 분석 결과 2011년 연금저축 세제혜택 한도 상향 이후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연금저축이 증가하고, 2014년 세액공제 도입 이후 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정황상의 증거일 뿐이고 정책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미시데이터를 이용하여 여타 조건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정책 효과를 측정하는 계량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사적연금세제 변화가 연금저축 행위에 미친 효과를 미시데이터를 이용한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를 소개한다.

2. 미시적 분석

연금세제 변화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재정패널 1~8차(2007~2014년) 자료를 활용하여 계량분석을 실행하였다. 재정패널 데이터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매해 동일한 대상자를 추적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제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는 패널 조사 방식으로 구축한 자료로, 표본 유지율 역시 약 80%로 높은 수준이다.

세제혜택 상향 조정의 정책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1차(2007년)부터 6차(2012년)까

23) 정월석(2016)

지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세제혜택 방식변경의 정책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6차(2012년)부터 8차(2014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저축·소비에 관한 성향 혹은 습관 등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는 효과를 감안하기 위해 추정모형은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였다.

가. 세제혜택 상향 조정 정책효과

1) 기술통계

세제혜택 상향 조정의 정책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1차(2007년)부터 6차(2012년)까지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선택 변수로는 연금저축 가입유무와 연금저축 납입액을 저축행위를 관찰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여타 경제적 변수로는 연간소득,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변화(저축), 경제활동 여부, 임금근로자 여부 등을 포함하였다. 사회적 변수로는 응답자 연령, 연령제곱, 성별, 가구주 여부, 가구원 수, 18세 이하 자녀 수, 배우자 유무, 교육년수 등을 추정모델에 포함하였다.

세제혜택 상향 조정의 정책효과 분석에 앞서 해당기간 동안의 기술통계량을 표에 제시하였다. 전체는 데이터 전체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최댓값과 최솟값을 의미한다. 관측치 간(Between)이란 관측기간 내 각 관측치 평균(\bar{x}_i)의 최솟값과 최댓값, 그리고 표준편차를 표시한 것이다. 관측치 내(Within)란 동일 관측값과 기간 내 평균과의 차이에서 전체 평균을 고려한 값($(x_i - \bar{x}_i) - \bar{x}$)의 최대, 최소, 그리고 표준편차를 표시한 것이다. 이는 관측치의 기간평균과 관측값의 차이가 전체 평균과 떨어져 있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N 은 기간 내 전체 관측치의 숫자, n 은 관측된 id의 숫자, 그리고 \bar{T} 는 관측치들의 평균 관측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연간 납입금액을 설명하면, 기간 내 전체 관측치 숫자(N)는 30,994명이다. 기간 중복을 제외한 관측치(n) 수는 8,033명이며, 각 관측치 평균의 최댓값은 1,200만원, 최솟값은 0원, 그리고 표준편차는 63.3만 원이었다. 따라서 관측치 간 이질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관측치의 기간 6년 중 평균관측기간(\bar{T})은 3.85년

이며, 동일 관측값이 전체 평균을 고려해서 자신의 평균과 떨어져 있는 최솟값은 -625만 원, 최댓값은 1,021만 원, 그리고 표준편차는 72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재정패널 1~6차 데이터 요약

변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관측치
가입 여부 (가입=1)	전체	0.073353	0.260718	0	1	N=31,669
	관측치 간	-	0.179111	0	1	n=8,471
	관측치 내	-	0.187509	-0.7599	0.906686	$\bar{T}=3.73$
연간 납입액 (만원)	전체	21.19567	95.45779	0	1,200	N=30,994
	관측치 간	-	63.30585	0	1,200	n=8,033
	관측치 내	-	72.60436	-625.47	1,021,196	$\bar{T}=3.85$
연령 (세)	전체	42.38353	9.522063	15	60	N=31,669
	관측치 간	-	10.19138	15	60	n=8,471
	관측치 내	-	1.480026	39.38353	45.38353	$\bar{T}=3.73$
연령제곱	전체	1887.03	803.6254	225	3,600	N=31,669
	관측치 간	-	851.5526	225	3,600	n=8,471
	관측치 내	-	129.7518	1,544.53	2,216.53	$\bar{T}=3.73$
성별 (남=1)	전체	0.631848	0.482311	0	1	N=31,669
	관측치 간	-	0.496384	0	1	n=8,471
	관측치 내	-	0	0.631848	0.631848	$\bar{T}=3.73$
가구주 (가구주=1)	전체	0.62528	0.484058	0	1	N=31,669
	관측치 간	-	0.489096	0	1	n=8,471
	관측치 내	-	0.110905	-0.20805	1.458614	$\bar{T}=3.73$
가구원 수 (명)	전체	3.506647	1.172339	1	9	N=31,669
	관측치 간	-	1.128102	1	8	n=8,471
	관측치 내	-	0.402615	-0.49335	7.173314	$\bar{T}=3.73$
18세 이하 자녀 수 (명)	전체	0.911838	0.969763	0	4	N=34,669
	관측치 간	-	0.927341	0	4	n=8,471
	관측치 내	-	0.310845	-1.4215	3.411838	$\bar{T}=3.73$
배우자 유무 (유=1)	전체	0.793205	0.405014	0	1	N=31,669
	관측치 간	-	0.403873	0	1	n=8,471
	관측치 내	-	0.149179	-0.04013	1.626538	$\bar{T}=3.73$

변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관측치
교육년수 (년)	전체	13.5128	2,825758	0	20	N=31,669
	관측치 간	-	2,890414	0	20	n=8,471
	관측치 내	-	0,411272	3,512804	18,0128	$\bar{T}=3.73$
경찰 여부 (경찰=1)	전체	0.781585	0,413177	0	1	N=31,669
	관측치 간	-	0,353114	0	1	n=8,471
	관측치 내	-	0,338652	-0,05175	1,614918	$\bar{T}=3.73$
급여소득 (만 원)	전체	0,669712	0,470326	0	1	N=26,598
	관측치 간	-	0,438565	0	1	n=7,659
	관측치 내	-	0,214871	-0,13029	1,469712	$\bar{T}=3.47$
거주지 (도시=1)	전체	0,943699	0,230506	0	1	N=31,669
	관측치 간	-	0,224638	0	1	n=8,471
	관측치 내	-	0,061928	0,110366	1,777032	$\bar{T}=3.73$
금융자산 (만 원)	전체	2,921,199	7,270,87	0	242,212	N=31,669
	관측치 간	-	5,944,736	0	150,000	n=8,471
	관측치 내	-	4,485,619	-84078,8	193,764.5	$\bar{T}=3.73$
저축액 (만 원)	전체	1,846,996	2,684,603	-5000	5,000	N=31,669
	관측치 간	-	1,728,451	-1416,67	5,000	n=8,471
	관측치 내	-	2,298,388	-6486,34	8,263,663	$\bar{T}=3.73$
연간소득 (만 원)	전체	2,967,889	2,770,769	0	75,300	N=31,669
	관측치 간	-	2,443,809	0	49,881,83	n=8,471
	관측치 내	-	1,268,392	-17319,6	47,443,89	$\bar{T}=3.73$

2) 추정모형

결과 해석의 편의를 위해 연금저축 납입액의 로그값을 종속변수로 하였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변수로는 연령, 연령제곱, 세대주 여부, 18세 이하 자녀 수, 배우자 유무 등 인구학적 변수를 벡터 X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저축액, 금융자산 규모, 연간소득 등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금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상한의 대수값을 설명변수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값이 자연로그인 경우 추정모형의 계수값은 둘 사이의 탄력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소득계

층별 정책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소득계층을 구분하였다. 소득계층은 소득세법 제55조의 3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그리고 5,500만 원 초과는 고소득층으로 구분하였다.

추정모델은 소비 및 저축 행태 등 데이터에는 드러나지 않는 관측치의 특성을 고려한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소득수준별로 연금저축 세제혜택 상한 확대의 정책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소득계층별 더미와 세제혜택 상한의 교차항을 이차차분모형(Difference in Difference, 이하 DID) 항으로 추가하였다. 먼저 실험군은 국세통계연보상에서 세제혜택 한도 상향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난 고소득층으로 하고,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은 저소득층을 대조군으로 삼아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계량분석에서는 소득계층별로 5,500만 원 이하의 대조군으로 소득계층 더미변수에 0을 부여하고, 연소득 5,500만 원 초과 고소득층은 실험군으로 소득계층 더미변수에 1을 부여하였다. 또한 소득공제 한도의 대수값은 세제혜택 상한이 상향 조정된 2011년 이후에는 $\ln(400)$, 그리고 2011년 이전에는 $\ln(300)$ 이 된다. 따라서 소득수준과 세제혜택 상한의 교차항은 고소득층의 세제혜택 상한 상향 조정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게 된다.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추정모델은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가 연금저축 납입액의 자연대수를 취한 값이므로 자연로그를 취한 설명변수인 금융자산, 연간소득, 소득수준과 세제상한의 교차항의 계수는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해당 변수의 탄력성을 나타내게 된다.

$$\ln(\text{연금저축납입액})_{jt} = \beta_0 + \beta_i X + \beta_1 \ln(\text{저축액})_{jt} + \beta_2 \ln(\text{금융자산})_{jt} + \beta_3 \ln(\text{연간소득})_{jt} + \beta_4 \text{고소득}_{jt} * \ln(\text{세제상한})_t + \epsilon$$

3) 추정결과

계량경제학적 모델을 활용한 추정결과는 <표 IV-4>에 제시하였다. 연금저축 납입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금융자산 규모, 연간소득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 교육년수, 그리고 저축액 등에 대한 변수는 연금저축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금저축과 세제혜택 상한의 대수값에 대한 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저축 상한 확대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가정한 모델을 이용해 계량분석을 실시한 후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를 하나씩 단계별 소거방식(Stepwise method)으로 추정모형을 축소시켰으나, 추정된 변수 또는 변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변하지 않았으며, 추정된 계수의 값 역시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추정데이터 중 연금저축 가입자 수가 적은 수준이므로 다른 방법론을 통해 결과를 검정하기 위해 패널데이터에서 연금저축 미가입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를 고려한 Panel Tobit 분석을 실행하였다. Panel Tobit 분석 결과 금융자산 대수값이 클수록, 개인총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저축 납입액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상한 상향 조정으로 인해 고소득층의 연금저축이 저소득층에 비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정효과모형의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차분식을 사용하여 계수를 추정하는 고정효과모형의 특성상 추정이 어려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Time invariant variables)의 계수는 Panel Tobit 분석으로 추정이 가능했는데, 배우자가 있을수록, 교육년수가 길수록 그리고 임금근로자일수록 연금저축 납입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⁴⁾ 이러한 납입액과 사회·경제적 특징은 경제학적 직관과 일치하는 결과라 하겠다.

24) 고정효과 모형에서 시간 불변한(Time invariant) 변수의 계수값이 추정된 것은 데이터가 불균형 패널데이터이기 때문임

〈표 IV-4〉 연금세제 한도 확대에 따른 연금저축 납입액 변화 - 고정효과분석

구분	(1)	(2)	(3)	(4)	(5)
연령(2014년)	0.0245	0.0276	0.0322	-0.00117	-0.00029
	(1.04)	(1.21)	(1.42)	(-0.26)	(-0.06)
연령제곱	-0.00029	-0.00033	-0.00037	-	-
	(-1.09)	(-1.28)	(-1.46)	-	-
가구주 여부(=1)	0.109	0.108	-	0.114	-
	(1.85)	(1.83)	-	(1.93)	-
18세 이하 자녀 수	0.0126	-	-	-	-
	(0.59)	-	-	-	-
배우자 유무(=1)	0.0584	0.0592	0.0599	0.0729	0.0738
	(1.28)	(1.30)	(1.31)	(1.64)	(1.66)
교육년수(년)	-0.00982	-0.00991	-0.00930	-0.0101	-0.00943
	(-0.46)	(-0.47)	(-0.44)	(-0.48)	(-0.45)
임금근로자(=1)	0.0353	0.0352	0.0350	0.0349	0.0343
	(1.15)	(1.15)	(1.14)	(1.13)	(1.11)
도시거주(=1)	-0.134	-0.134	-	-	-
	(-1.29)	(-1.29)	-	-	-
ln(저축액)	0.000358	0.000377	0.000285	-	-
	(0.15)	(0.16)	(0.12)	-	-
ln(금융자산)	0.0123***	0.0123***	0.0122**	0.0125***	0.0123***
	(3.32)	(3.31)	(3.29)	(3.75)	(3.68)
ln(개인총 소득)	0.0612***	0.0610***	0.0625***	0.0628***	0.0648***
	(3.48)	(3.47)	(3.56)	(3.59)	(3.71)
고소득 *ln(세제상한)	0.0240***	0.0241***	0.0240***	0.0241***	0.0239***
	(3.67)	(3.68)	(3.67)	(3.68)	(3.66)
상수	-0.552	-0.595	-0.784	-0.148	-0.138
	(-0.96)	(-1.05)	(-1.40)	(-0.43)	(-0.41)
관측치	30328	30328	30328	30328	30328

주: 괄호안의 숫자는 t-통계량, * p<0.05, ** p<0.01, *** p<0.001

〈표 IV-5〉 소득공제 한도 상황에 따른 연금저축 납입액 변화 - Tobit 분석

구분	(1)	(2)	(3)	(4)	(5)
연령(2014)	0.0133	0.0108	0.0100	0.00117	0.000980
	(1.34)	(1.15)	(1.08)	(0.86)	(0.74)
연령제곱	-0.000147	-0.000114	-0.000108	-	-
	(-1.25)	(-1.05)	(-0.99)	-	-
가구주(=1)	-0.0172	-0.0184	-	-0.0147	-
	(-0.72)	(-0.77)	-	(-0.62)	-
18세 이하 자녀 수	-0.00922	-	-	-	-
	(-0.74)	-	-	-	-
배우자 유무(=1)	0.0808**	0.0745**	0.0738**	0.0839**	0.0828**
	(2.83)	(2.73)	(2.71)	(3.24)	(3.20)
교육년수	0.0221***	0.0221***	0.0218***	0.0224***	0.0223***
	(4.82)	(4.81)	(4.78)	(4.95)	(4.93)
임금근로자(=1)	0.159***	0.159***	0.160***	0.159***	0.159***
	(7.55)	(7.57)	(7.60)	(7.55)	(7.58)
도시거주(=1)	-0.0172	-0.0176	-	-	-
	(-0.38)	(-0.39)	-	-	-
ln(저축변화)	-0.00231	-0.00232	-0.00222	-	-
	(-1.08)	(-1.08)	(-1.04)	-	-
ln(금융자산)	0.0295***	0.0296***	0.0298***	0.0282***	0.0283***
	(10.04)	(10.08)	(10.14)	(10.58)	(10.67)
ln(개인총 소득)	0.109***	0.109***	0.106***	0.111***	0.109***
	(8.34)	(8.36)	(8.42)	(8.56)	(8.71)
고소득 *ln(세제상한)	0.0863***	0.0861***	0.0861***	0.0858***	0.0857***
	(16.61)	(16.59)	(16.58)	(16.54)	(16.53)
상수	-1.424***	-1.382***	-1.365***	-1.237***	-1.220***
	(-6.63)	(-6.67)	(-6.77)	(-10.19)	(-10.31)
sigma_u 상수	0.707***	0.707***	0.707***	0.707***	0.707***
	(73.42)	(73.45)	(73.57)	(73.47)	(73.57)
sigma_e 상수	1.151***	1.151***	1.151***	1.151***	1.151***
	(219.38)	(219.39)	(219.44)	(219.39)	(219.45)
관측치	30,328	30,328	30,328	30,328	30,328

나. 세액공제 전환의 정책효과

1) 변수선택과 기술통계

세제혜택 상향 조정의 정책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6차(2012년)부터 8차(2014년)까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택 변수로는 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저축행태를 관찰하기 위한 변수로 선정하였다. 여타 연금저축 행위 추정을 위한 경제적 변수로는 연간소득, 금융자산, 금융자산 변화(저축), 경제활동 여부, 임금근로자 여부 등을 포함하였다. 사회적 변수로는 응답자의 연령, 연령제곱, 성별, 가구주 여부, 가구원 수, 18세 이하 자녀 수, 배우자 유무, 교육년수 등을 설명변수로 포함시켰다. 해당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²⁵⁾

〈표 IV-6〉 재정패널 6~8차 데이터 요약

변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관측치
가입 여부 (가입=1)	전체	0.063666	0.244165	0	1	N=15,754
	관측치 간	-	0.189755	0	1	n=6,198
	관측치 내	-	0.150224	-0.603	0.7303	$\bar{T}=2.54$
연령제곱	전체	21,15158	103,4363	0	1800	N=15,754
	관측치 간	-	79,62628	0	1800	n=6,198
	관측치 내	-	68,57205	-712,182	1,221,15	$\bar{T}=2.54$
가구원 수 (명)	전체	43.85477	9,668234	17	60	N=15,754
	관측치 간	-	10,15021	17	60	n=6,198
	관측치 내	-	0,765475	42,85477	44,85477	$\bar{T}=2.54$
교육년수 (년)	전체	2,016.71	826,9962	289	3,600	N=15,754
	관측치 간	-	861,5753	289	3,600	n=6,198
	관측치 내	-	69,19197	1,898.71	2,135.04	$\bar{T}=2.54$
거주지 (도시=1)	전체	0.604354	0.489004	0	1	N=15,754
	관측치 간	-	0.494132	0	1	n=6,198
	관측치 내	-	0	0,604354	0,604354	$\bar{T}=2.54$

25) 〈표 IV-6〉 표를 해석하는 방법은 앞서 설명하였으므로, 본 절에서는 기술통계표 해석에 관한 설명은 생략함

변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관측치
연간소득 (만 원)	전체	0.592484	0.491388	0	1	N=15,754
	관측치 간	-	0.49184	0	1	n=6,198
	관측치 내	-	0.081642	-0.07418	1.259151	$\bar{T}=2.54$
가구원 수 (명)	전체	3.470039	1.1644	1	8	N=15,754
	관측치 간	-	1.134196	1	8	n=6,198
	관측치 내	-	0.299318	0.136706	6.803373	$\bar{T}=2.54$
18세 이하 자녀 수 (명)	전체	0.827853	0.957921	0	4	N=15,754
	관측치 간	-	0.932622	0	4	n=6,198
	관측치 내	-	0.200931	-1.17215	2.327853	$\bar{T}=2.54$
배우자 유무 (유=1)	전체	0.751619	0.432088	0	1	N=15,754
	관측치 간	-	0.43539	0	1	n=6,198
	관측치 내	-	0.084944	0.084952	1.418285	$\bar{T}=2.54$
교육년수 (년)	전체	13.78634	2.637579	0	20	N=15,754
	관측치 간	-	2.677482	0	20	n=6,198
	관측치 내	-	0.158116	5.78634	18.45301	$\bar{T}=2.54$
경찰 여부 (경찰=1)	전체	0.949981	0.217991	0	1	N=15,754
	관측치 간	-	0.219061	0	1	n=6,198
	관측치 내	-	0.118042	0.283314	1.616648	$\bar{T}=2.54$
급여 소득자 (급여=1)	전체	0.689412	0.462749	0	1	N=15,754
	관측치 간	-	0.434681	0	1	n=6,198
	관측치 내	-	0.173707	0.022746	1.356079	$\bar{T}=2.54$
거주지 (도시=1)	전체	0.939317	0.238756	0	1	N=15,754
	관측치 간	-	0.228976	0	1	n=6,198
	관측치 내	-	0.073095	0.27265	1.605984	$\bar{T}=2.54$
금융자산 (만 원)	전체	3,400.15	8,122.11	0	230,000	N=15,754
	관측치 간	-	7,711.9	0	230,000	n=6,198
	관측치 내	-	3,710.34	-61,000	127,000	$\bar{T}=2.54$
저축액 (만 원)	전체	1,050.42	2,432.8	-5,000	5,000	N=15,754
	관측치 간	-	1,953.06	-5,000	5,000	n=6,198
	관측치 내	-	1,735.05	-5,616	7,383.76	$\bar{T}=2.54$
연간소득 (만 원)	전체	3,277.49	3,479.81	0	198,000	N=15,754
	관측치 간	-	2,876.40	0	73,466.6	n=6,198
	관측치 내	-	1,827.18	-62,189	127,810	$\bar{T}=2.54$

2) 추정모형

세액공제 전환의 정책 효과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이중차분방법(DID)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먼저 이중차분방법에서 실험군(Treatment group)은 국세통계연보상에서 세액공제 도입 이후 연금저축 납입액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저소득층으로 지정하였다. 한편,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연금저축 납입액이 거의 줄어들지 않은 고소득층을 대조군(Control group)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데이터 분석에서는 소득수준은 소득수준 더미를 활용하여 나누었는데,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를 활용하여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자는 실험군으로 분류하여 소득수준 더미에 1의 값을 부여하였고, 연소득 5,500만 원 초과자는 대조군으로 분류하여 소득수준 더미에 0의 값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제도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14년 이후는 세액공제를 의미하는 1의 값을 부여하고, 2014년 이전은 세액공제가 도입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0의 값을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득수준별 정책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소득계층 더미와 세액공제 더미의 교차항을 변수로 추가하였다. 따라서 모델을 이용한 추정결과 나타난 저소득과 세액공제 교차변수의 계수는 고소득층 대비 저소득층의 정책에 대한 반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ln(\text{연금저축납입액})_{jt} = \beta_0 + \beta_t X + \beta_1 \ln(\text{저축액})_{jt} + \beta_2 \ln(\text{금융자산})_{jt} + \beta_3 \ln(\text{연간소득})_{jt} + \beta_4 \text{저소득}_{jt} * \text{세액공제}_t + \epsilon \quad (2)$$

3) 추정결과

해당기간 동안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금저축 납입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연소득과 연령 그리고 세액공제가 연금저축 납입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저소득층 더미와 세액공제 더미 간 교차

항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을 더 많이 감소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연금저축 세제혜택 상향에 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전체 추정데이터 중 연금저축 가입자 수가 적은 수준이므로 고정효과분석을 통한 분석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패널 데이터에서 연금저축 미가입자가 존재하는 경우를 고려한 Panel Tobit 분석을 실행하였다. Panel Tobit 분석 결과 금융자산 대수값이 클수록, 개인총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저축 납입액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방식이 세액공제로 전환된 이후 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이 고소득층에 비해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정효과모형의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고정효과모형으로는 추정이 어려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징(Time invariant variables)에 대한 Panel Tobit 분석 결과 앞선 연금저축 상향 상향 조정에 대한 분석 결과와 거의 동일하게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교육년수가 길수록, 그리고 임금근로자일수록 연금저축 납입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개인의 저축행위와 관련된 경제학적 직관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IV-7〉 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납입액 변화(신)

구분	(1)	(2)	(3)	(4)	(5)
연령(2014)	0.108**	0.101*	0.101*	0.0661***	0.0662***
	(2.67)	(2.52)	(2.55)	(5.52)	(5.54)
연령제곱	-0.000478	-0.000379	-0.000386	-	-
	(-1.11)	(-0.90)	(-0.92)	-	-
가구주 여부(=1)	0.0161	0.0174	-	0.0219	-
	(0.20)	(0.22)	-	(0.27)	-
18세 이하 자녀 수	-0.0357	-	-	-	-
	(-1.07)	-	-	-	-
배우자 유무(=1)	0.0553	0.0536	0.0522	0.0641	0.0627
	(0.69)	(0.67)	(0.66)	(0.81)	(0.80)
교육년수(년)	0.0133	0.0135	0.0135	0.0140	0.0140
	(0.45)	(0.45)	(0.45)	(0.47)	(0.47)
임금근로자(=1)	0.0715	0.0722	0.0725	0.0721	0.0724
	(1.77)	(1.79)	(1.80)	(1.79)	(1.80)
도시거주(=1)	0.0147	0.0141	-	-	-
	(0.15)	(0.15)	-	-	-
ln(저축액)	0.00402	0.00401	0.00401	-	-
	(1.38)	(1.38)	(1.38)	-	-
ln(금융자산)	0.00825	0.00831	0.00828	0.0114**	0.0113**
	(1.72)	(1.73)	(1.73)	(2.68)	(2.67)
ln(개인총 소득)	0.0752***	0.0755***	0.0757***	0.0761***	0.0764***
	(3.51)	(3.53)	(3.54)	(3.57)	(3.59)
저소득*세액공제	-0.128***	-0.128***	-0.128***	-0.127***	-0.127***
	(-4.40)	(-4.40)	(-4.40)	(-4.39)	(-4.39)
상수	-4.265***	-4.177***	-4.170***	-3.430***	-3.425***
	(-4.08)	(-4.01)	(-4.03)	(-5.15)	(-5.14)
관측치	20,358	20,358	20,358	20,358	20,358

주: 괄호안의 숫자는 t-통계량, * p<0.05, ** p<0.01, *** p<0.001

〈표 IV-8〉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연금저축 납입액 변화 - Tobit 분석

구분	(1)	(2)	(3)	(4)	(5)
연령(2014)	0.0195	0.0189	0.0175	0.00689***	0.00648***
	(1.66)	(1.70)	(1.59)	(4.30)	(4.20)
연령제곱	-0.000147	-0.000139	-0.000128	-	-
	(-1.07)	(-1.09)	(-1.00)	-	-
배우자 유무(=1)	-0.0273	-0.0278	-	-0.0263	-
	(-0.96)	(-0.98)	-	(-0.94)	-
18세 이하 자녀 수	-0.00260	-	-	-	-
	(-0.17)	-	-	-	-
배우자 유무(=1)	0.0731*	0.0711*	0.0733*	0.0823**	0.0828**
	(2.08)	(2.15)	(2.22)	(2.61)	(2.63)
교육년수(년)	0.0404***	0.0404***	0.0396***	0.0405***	0.0402***
	(7.17)	(7.18)	(7.07)	(7.27)	(7.23)
임금근로자(=1)	0.182***	0.182***	0.182***	0.182***	0.182***
	(7.12)	(7.13)	(7.14)	(7.10)	(7.14)
도시거주(=1)	-0.0493	-0.0494	-	-	-
	(-1.00)	(-1.00)	-	-	-
ln(저축액)	0.00209	0.00209	0.00219	-	-
	(0.81)	(0.81)	(0.85)	-	-
ln(금융자산)	0.0252***	0.0252***	0.0256***	0.0264***	0.0267***
	(6.91)	(6.94)	(7.05)	(8.11)	(8.24)
ln(개인총 소득)	0.211***	0.211***	0.206***	0.210***	0.206***
	(14.73)	(14.74)	(15.11)	(14.75)	(15.20)
저소득*세액공제	-0.0818***	-0.0818***	-0.0800***	-0.0817***	-0.0809***
	(-4.78)	(-4.78)	(-4.69)	(-4.79)	(-4.75)
상수	-2.637***	-2.627***	-2.607***	-2.433***	-2.397***
	(-10.38)	(-10.65)	(-10.92)	(-17.68)	(-18.14)
sigma_u 상수	0.801***	0.801***	0.802***	0.801***	0.802***
	(70.30)	(70.30)	(70.38)	(70.34)	(70.40)
sigma_e 상수	1.096***	1.096***	1.096***	1.096***	1.096***
	(170.57)	(170.57)	(170.60)	(170.58)	(170.61)
관측치	20358	20358	20358	20358	20358

3. 소결

세제혜택 한도 확대는 세제혜택 확대라는 직접적인 효과와 노후자산 적립 필요성 환기와 같은 간접적인 효과 등을 일으켜 사적연금자산의 적립 확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수분별로 연금저축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 상향 조정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2011년에 이루어진 연금저축 납입액 한도 상향은 저축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저축 증가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정부는 고소득층의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기 위해 2014년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을 기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임으로써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은 달성했을 수 있으나, 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이 고소득층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결과도 초래하였다.

V. 연금세제 평가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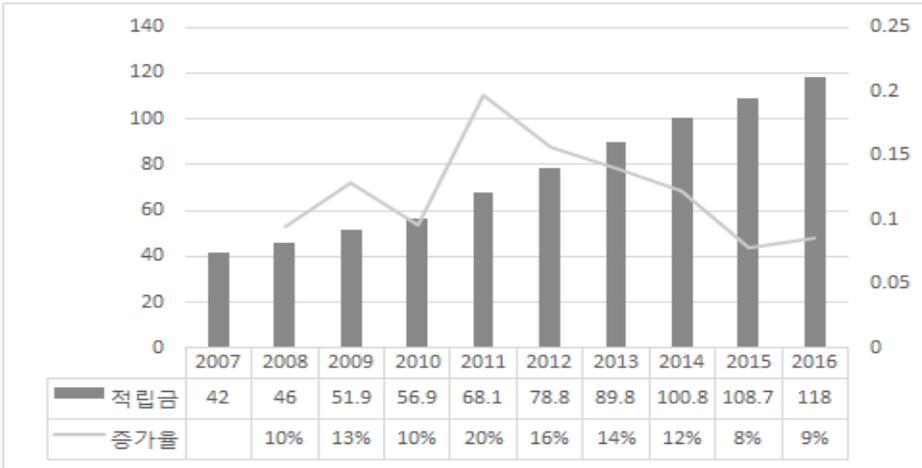
1. 연금세제 정책평가

앞서 언급한 대로 세제혜택 한도 상향은 세제혜택의 직접적인 효과와 연금저축에 대한 광고와 같은 주위환기 효과 등으로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액을 크게 증대시켰다. 이를 수치를 통해 살펴보면, 2007년 42조 원 수준이던 연금저축 적립금은 2010년 60조 원으로 증가하였고, 세제혜택 한도가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2011년에는 75조 원, 2013년에는 90조 원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따라서 세제혜택 확대는 연금저축의 양적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세통계연보와 재정패널 조사를 활용하여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납입추이 및 정책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상향 조정된 세제혜택 한도에 민감하게 반응한 계층은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이었으며, 저축 여력이 적은 저소득층에는 추가적인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4년 고소득층의 과도한 혜택을 조정하기 위해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국세통계연보와 재정패널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정책 시행 이후의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고소득층의 세제혜택을 조정하여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목적은 달성했을 수 있으나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 수준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대 20%에 이르던 적립금 증가율 역시 한 자릿수로 감소하였다. 특히, 소득수준별로 세액공제 도입 이후 연금저축 납입행태를 살펴본 결과, 고소득층의 연금저축 납입행태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률 및 납입액은 정부의 의도와 달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1〉 연도별 연금저축 적립금 추이

(단위: 년, 조 원(좌), %(우))



자료: 금융감독원(2017)에 인용된 수치를 재구성

세액공제 전환 이후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액이 감소한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세액공제 도입으로 인해 과세미달자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동 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유인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²⁶⁾

논의를 정리하면 세제혜택 한도 상향의 경우 저소득층은 저축여력이 크지 않아 기존 세제혜택 한도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세제혜택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은 명목상으로는 고소득층의 소득공제에 비해 저소득층에 더 높은 공제율을 제공하나, 증가한 과세미달자의 증가로 인해 오히려 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이 고소득층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에도 사적연금 세제혜택 한도의 지속적인 상향 조정 혜택이 중산층 이상의 여유 있는 계층에 집중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세액공제 제도(Saver's Credits)를 도입하였으나, 이 역시 과세미달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26) 정원석·문성훈(2016)

2. 정책제안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의 세제혜택이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납입유인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연금저축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납입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보조금 지급, 가입방식 개선 그리고 홍보 강화 등의 정책을 취하고 있다.

가. 환급형 세액공제

현재 우리나라는 연금저축 납입액의 일정부분을 산출세액에서 감면해주는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결정세액이 0원인 과세미달자에게는 연금저축 유인 효과가 없다. 이를 수치를 통해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과세미달자 비율은 46.8%로 근로자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세액공제를 통해 감면해줄 세금이 없다. 그리고 소득수준별로는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자의 경우 68.6%가 과세미달자이고, 연소득 2,000만 원 이상 4,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23.7%가 과세미달자로 나타났다. 반면 연소득이 6,000만 원 이상 8,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과세미달자 비율은 2.6%, 그리고 그 이상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의 경우 과세미달자 비율은 0.2%에 불과했다.

특히, 세액공제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계층의 과세미달자 비율은 47.4%에서 69.2%로, 그리고 2,000만 원 이상 4,000만 원 이하 계층의 저소득층의 경우 과세미달자 비율이 2.6%에서 25.7%로 급증하였다. 해당 소득계층의 과세미달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저축 세제혜택이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연금저축 가입률 및 납입액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1〉 근로자 소득수준별 과세미달자 비율

(단위: 만 원, %)

구분	전체	~2,000	~4,000	~6,000	~8,000	~10,000
2012	32.7	48.6	3.0	0.2	0.0	0.0
2013	31.3	47.4	2.6	0.2	0.0	0.0
2014	48.1	69.2	25.7	3.1	0.3	0.2
2015	46.8	68.6	23.7	2.6	0.2	0.2

자료: 국세통계 연보 각 연도를 가공한 정원석(2017)자료를 재인용

따라서 과세미달자가 많은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결정세액이 0원 이하이더라도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환급해주는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환급형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결정세액이 0원 이상인 중산층 및 고소득자의 경우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 과세미달자의 경우 실질적인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시 필요한 재정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가장 최근 자료인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하여 근로소득자 중 과세미달자의 연금저축 납입현황을 분석하였다. 과세미달자 중 연금저축을 납입한 가입자의 숫자는 약 2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납입한 연금저축액은 약 2,54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이 과세미달자이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한 공제세액은 약 376억 원이었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계층이 가장 높은 수준인 247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계층이 16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금저축을 납입한 과세미달자의 소득계층별 분포는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계층의 비중이 인원 수 기준으로 79.2%, 납입액 기준으로는 89%, 그리고 공제세액 기준으로는 70%(263/3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단순하게 계산하면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시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출은 약 376억 원이 되고 이 중 약 70%의 재원은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중·저소득 계층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해당 소득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제도 탄력성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의 효과를 수치적으로 예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실질공제율이 상승할 경우 중산층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²⁷⁾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중산층의 연금저축 가입률이 가장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V-2〉 소득수준별 과세미달 근로자 연금저축 납입 현황

(단위: 명, 억 원)

구분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초과	계
가입자 수	359	26,588	132,688	37,654	4,052	201,341
납입금액	0.49	105	1,649	695	93	2,543
공제세액	0.07	16	247	102	11	376

자료: 국세통계 연보 2015년 자료를 재구성

또한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으로 인해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계층의 연금저축 가입률 및 납입액 수준이 2013년도 수준으로 제고되는 경우를 가정할 경우 동 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1조 1,845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15년 해당 소득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인 4,483억 원의 약 2.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비용이라 할 수 있는 해당 소득계층의 총 세액공제액은 1,776억 원이며 이 중 과세미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733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즉, 1,776억 원의 재정지출(세액공제)로 약 1조 1,845억 원의 노후소득원 적립을 유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7) 정원석·강성호(2015)

〈표 V-3〉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으로 연금저축 가입률 제고 시 납입액 및 세액공제액

구분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4천만 원 이하	합계
근로소득자수(2015년)A	7,657,059명	4,858,285명	12,515,344명
가입률(2013년)B	1.7%	10.0%	-
평균 납입액(2013년)C	159만 원	201만 원	-
총납입액(D=A×B×C)	2,070억 원	9,775억 원	11,845억 원
세액공제(E=D×15%)	310억 원	1,466억 원	1,776억 원
과세미달률(2015년)F	81.2%	32.8%	-
과세미달자에 대한 세액공제 총액(G=E×F)	252억 원	481억 원	733억 원

주: 국세통계연보 2013년과 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나. 가입방식 변화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그리고 퇴직연금(및 IRP) 본인부담금에 대한 가입방식 변화 역시 사적연금 가입률 및 납입액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연금저축 퇴직연금 가입 대상자는 본인납입액의 절반을 부담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되 이를 원하지 않으면 가입을 탈퇴(Opt out)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동가입제도 도입 이후 영국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크게 개선되었다. 특히,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연소득 1만 파운드 이상 2만 파운드 미만 저소득층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제도 도입 이전인 2012년 20%에서 제도 도입 이후인 2016년 63%까지 제고되었다. 이는 저소득층에게 사적연금 납입금의 최대 9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독일에서 소득 1분위 그룹의 리스터연금 가입률이 가입 초기 5%에서 25%까지 제고되는 데 10년이 걸린 것을 감안할 때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영국의 경우 보조금 지급 등의 세제혜택과 사적연금 자동가입 방식을 적절히 혼합하여 큰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뉴질랜드 역시 직장을 가진 모든 성인은 사적연금에 자동가입되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탈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납입요율은 3%, 4%, 그리고 8%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뉴질랜드는 가입자가 납입요율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납입

요율이 결정되는 기본옵션(Default option)방식을 적용하였는데, 2009년까지 기본 가입옵션은 4%였으며, 이때까지 가입자 중 기본 가입옵션 4%를 선택한 비중은 62%에 달했다.

또한, Chetty(2013)는 퇴직연금 납입액을 결정할 때 임금 상승분의 일정부분을 퇴직연금으로 적립되도록 미리 설정해 놓는 경우 퇴직연금 납입액 증가가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사적연금 자동가입 혹은 납입계획 사전 확정 등이 효과가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적연금 가입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적연금 가입 및 납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본인의 임금상승분 중 일정비율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되도록 하고, 이렇게 적립된 적립금은 사업주 부담금과 동일하게 다루어 납입 시에는 과세이연을 해주고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현재는 퇴직연금 납입요율이 연소득 8.3% 이상의 요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납입요율을 연소득의 최소 8.3%에서 중간 12%, 그리고 최대 15%까지 중 선택할 수 있게 한 다음, 8.3% 이상을 선택한 근로자는 그 차액만큼을 본인의 연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뉴질랜드의 사례와 같이 가입 시 기본옵션을 설정하여 가입액 수준을 높이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홍보 강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는 사적연금 세제에 대한 홍보 강화를 들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영국 사례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을 제공해야 하는 고용주들이 퇴직연금과 관련된 의무를 잘 숙지하고 있는 것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국은 감독관청이 퇴직연금 관련 정보를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반면, 미국의 Saver's Credit

의 경우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낮은 것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실시된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 방식이 변경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2.7%에 이를 정도로 높았으며, 제도변화에 따라 본인의 세제혜택이 늘어났는지 혹은 감소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역시 27%에 달했다. 따라서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VI. 결론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고령층의 비율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빈곤노인의 비율 측면에서나 노인인구의 증가 속도 측면에서나 충분한 노후소득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현안 이슈가 되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정부는 국민연금 확대 및 지원과 퇴직연금 의무화 등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소득대체율이 충분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국민이 자발적으로 노후소득원을 준비하는 개인연금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개인이 연금자산을 적립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자를 대상으로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수 년간 개인연금 세제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세제혜택 한도 상향 조정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산층 및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된 반면 저축여력이 크지 않은 저소득층에는 별다른 혜택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고소득층 연금저축은 예전의 수준을 유지한 반면 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세제혜택 한도 상향 및 세액공제의 적용이 저축여력이 작고 과세미달자가 많은 저소득층에는 별다른 사적연금 납입유인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해외사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세제만으로는 사적연금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의사에 따라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제개선과 함께 다양한 방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영국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 방법을 자동가입제로 바꾸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퇴직연금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인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조금 지급은 독일을 비롯하여 영국, 뉴질랜드 등에 도입되어 사적연금 가입률 제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국민들로 하여금 과한 지원이라는 부담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및 과세미달자에게도 중산층 이상 계층과 동일한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은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액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연금의 도입 배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심각한 노인빈곤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그리고 심각한 노인빈곤으로 인해 도입된 기초연금은 후대에 커다란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라도 미래에 노인이 될 현재의 세대들이 본인과 우리 자녀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개인 스스로 노후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재정적 노력이 절실하다.

참고문헌

- 강성호(2015), 「노후준비실태와 필요노후소득, 그리고 과제」, 『고령화리뷰』, 2015년 제4호 테마진단, 보험연구원
- _____ (2017), 「연금세제 변화 인지에 따른 연금저축 가입유인」, 『KiRi Weekly』, 보험연구원
- 강성호·류건식(2016), 「공·사연계연금 도입 필요성과 설계방향」, 『KiRi Report』, 제395호, 보험연구원
- 김병권·우석진·안종길·빈기범(2013), 「세제혜택이 가계의 연금저축 행태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 『사회보장연구』, 제29권, 제3호, 한국사회보장학회, pp. 53~79
- 문성훈·김수성(2014), 「연금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연금세제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31권, 제4호, 한국세무학회, pp. 9~34
- 보험연구원(2017),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정원석(2016), 「세액공제 제도 도입 이후 연금저축 행태변화」, 『KiRi Weekly』, 보험연구원
- _____ (2017), 「연금저축 감소 원인과 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
- 정원석·강성호(2015), 「연금과세 체계변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가입효과 분석」, 『재정학연구』, 제8권, 제2호, 한국재정학회, pp. 113~142
- 정원석·김미화(2015),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방안』, 조사자료집, 보험연구원
- 정원석·마지혜(2017), 「소득세제 개편 이후 연금저축 납입 추이와 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
- 정원석·문성훈(2016), 「연금저축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소득계층별 사적연금 가입 행태 변화」, 『세무와 회계저널』, 제17권, 4호, 한국세무학회
- 정원석·임준·김유미(2016), 『금융·보험 세제연구』, 조사보고서, 보험연구원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 4), “근로자 세 명 중 한명만 연금저축 가입”

보건복지부 보도 설명자료(2013), “기초연금 도입 계획”

Chetty, Raj, John N. Friedman, Soren Leth-Petersen, Torben Nielsen, and Tore
Matthew S. Rutledge, April Yanyuan Wu, Francis M. Vitagliano(2014),
“Do Tax Incentives Increases 401(k) Retirement Saving? Evidence From
The Adoption of Catch up Contributions”,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at Boston College

Chung Wonsuk(2017), “Does Tax Incentive Really Increase Private Pension
Savings? Who saves more?”, working paper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2016), *Automatic enrolment evaluation
report 2016*, p. 16

Matthew S. Rutledge, April Yanyuan Wu, Francis M. Vitagliano(2015), “Do tax
incentive increase 401(k) retirement saving? Evidence from the
adoption of catch-up contributions”,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at
Boston College

Nest Cooperation(2016), *Employer's guide to auto-enrollment and NEST*

Peter R. Orszag(2004), “Prograssivity and Saving: Fixing the Nation's
upside-down Incentives for Saving”, Testimony before the House
Committee on Education and the Workforce

Ramnath, Shanthi(2013), “Taxpayers' Responses to Tax-Based Incentives for
Retirement Savings: Evidence from the Saver's Credit Notch”,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01: pp. 77~93

RPS(2008), “Split Refund and Saver's Credit: Two Better Ways to Save for
Retirement”

The Pensions Regulator(2017), *Detailed guidance for employment*

_____ (2016a), *Employers warned not to ignore penalty notice*,

Press release, <http://www.thepensionsregulator.gov.uk/press/pn16-22.aspx>

_____ (2016b), *Compliance and enforcement policy*

_____ (2016c), *Automatic enrollment commentary and analysis*

TransAmerica Center(2016), *17th Annual Transamerica Retirement Survey*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UK)

Federal Reserve

Internal Revenue Service(<https://www.irs.gov>)

NEST(<https://nest.com>)

The Pensions Advisory Service(<https://www.pensionsadvisoryservice.org.uk/>)

The Pensions Regulator(www.thepensionsregulator.gov.uk)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 조사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연구보고서

-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 · 윤성훈 · 이선주 2017.2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 · 채원영 2017.2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 · 강성호 ·
마지혜 2017.3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 강성호 · 김동겸
2017.3
2017-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 이태열 · 최장훈 · 김유미
2017.4
2017-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 정봉은 2017.5
2017-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이승준 · 정인영 2017.5
2017-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 · 이해은 2017.8
2017-10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 김대환
2017.8
2017-11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 박소정 · 박지운 2017.8
2017-1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 이기형 · 이규성 2017.9
2017-1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권영준 2017.9
2017-14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7.10
2017-15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7.11
2017-15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7.11
2017-16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 강성호 · 류건식 · 김동겸 2017.12

■ 연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 장동식 ·
김동겸 2008.1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 이경희 · 김동겸 2008.3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 · 권오경 2009.1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 이해은 2009.3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 이창우 · 김동겸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 기승도 · 김대환 2009.8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 김대환 · 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 이해은
 2010.4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 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 ·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구)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 최 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 이태열 · 신종협 · 황진태 ·
 유진아 · 김세환 · 이정환 · 박정희 · 김세중 · 최이섭 2008.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 · 이민환 ·
 유경원 · 최영목 · 최형선 · 최 원 · 이경아 · 이해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 김경환 · 이종욱
 2009.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 황진태 · 변혜원 · 이경희 ·
 이정환 · 박정희 · 김세중 · 최이섭 2009.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
 변혜원 · 권오경 2010.1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 김대환 · 이경희 · 이정환 ·
 최 원 · 김세중 ·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 안철경 · 변혜원 · 최영목 · 최형선 · 김정환 · 이상우 · 박정희 ·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 김정환 ·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 · 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 류건식 · 오영수 · 조용운 · 진익 · 유진아 · 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 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황진태 · 이정환 · 최원 · 김세중 · 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 이기형 · 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 변혜원 · 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 유진아 · 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 임준환 · 김해식 · 이경희 · 조영현 · 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 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 김대환 · 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전용식 · 이정환 · 최원 · 김세중 ·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익 · 오병국 · 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 김해식 · 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전용식 · 최원 · 김세중 · 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 · 강민규 · 이해량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 · 김해식 · 김석영 2014.3
- 2014-3 공 · 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 · 강성호 · 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김석영 · 김진익 · 최원 · 채원영 · 이아름 · 이해량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 · 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 ·

- 김경환 · 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 · 조재린 · 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김석영 · 김진억 · 최 원 · 채원영 · 이아름 · 이해랑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 · 정봉은 · 김유미 2016.2
-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 · 이정택 · 김혜란 2016.11
-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경영보고서(구)

- 2009-1 기업휴직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 · 유시용 ·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 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 이창우 ·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 정책연구실 ·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 · 장동식 ·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 · 최영목 · 김소연 · 장동식 ·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 변혜원 ·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 김소연 ·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 기승도 · 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 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 · 황진태 · 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 김대환 · 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 류건식 · 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 전용식 ·
이혜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④ sure 4.0 / 진 익 · 김동겸 · 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 김석영 · 김세영 ·
이혜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 류건식 ·
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 황진태 · 권용재 · 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 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 조용운 · 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 · 정봉은 · 황인창 · 이혜은 ·
김혜란 · 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 · 황인창 · 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 · 강성호 ·
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 김진억 ·
지재원 · 박정희 ·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 기승도 ·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 이상우 ·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 이정환 · 최이섭 · 정중영 ·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 · 김상수 · 김중훈 · 변귀영 ·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 전선애 · 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 오영수 ·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 이민환 ·
윤건용 · 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 김세환 ·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중협 ·
최형선 · 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 서대교 ·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 · 김해식 · 유진아 ·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 이창우 ·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 황진태 ·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 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 · 김해식 ·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 변혜원 · 이승준 ·

- 김경환 ·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 전용식 · 윤상호 · 기승도 · 이상우 · 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 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 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 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 황진태 · 변혜원 · 정원석 · 박선영 · 이상우 · 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 · 황진태 · 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 · 변혜원 · 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 · 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 · 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 · 강성호 · 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 · 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 · 박선영 · 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 · 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 · 윤성훈 · 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 · 오승연 · 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 · 강민규 · 이해랑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 변혜원 · 정원석 · 박선영 · 오승연 · 이상우 · 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 · 김세중 · 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 · 조영현 · 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 · 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 · 조재린 · 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 · 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 · 황진태 · 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 · 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 · 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 · 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 · 김세중 · 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 · 송윤아 · 채원영 2016.4
- 2016-5 금융 · 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 · 임 준 · 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 · 황인창 · 이경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 · 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 · 김해식 · 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 · 김혜란 2016.6
-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 · 김혜란 2016.9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 · 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장동식 · 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 · 정원석 · 김동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 정봉은 · 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 · 이해량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 · 박춘원 · 이항용 2015.5
-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 · 박선영 · 김유미 2015.5

-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 · 김미화
2015.5
-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 · 김혜란 2015.12

■ 연차보고서

-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 영문발간물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7
-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7
-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7
- 제 6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 이상우 ·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 ·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 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 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 전용식 · 전성주 ·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 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 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 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 · 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 · 조재린 ·
황진태 · 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 · 황인창 · 이해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 · 류건식 ·
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 · 조재린 2016.7
-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 · 이태열 2016.9
-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 2017-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7.7
-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 · 이태열 2017.7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 서성민 2008.9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회원 가입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문연차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9080 팩스 : (02) 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 (02-3775-9080 / pgc0703@kiri.or.kr)

저자약력

정원석

Indiana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originalstone@kiri.or.kr)

이선주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sjlee87@kiri.or.kr)

연구보고서 2017-19

연금세제 효과연구 : 세제변화와 연금저축 행태를 중심으로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인 한 기 정

발행처 보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ISBN 979-11-85691-70-1 94320

979-11-85691-50-3 (세트)

정가 10,000원